

별자기록	
클루기호	자료번호
A 3-6	199

Ma. d. 2

135-1

구별에서
공존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인권과 연대를 위하여

이화여대 가정관 319호
1996. 10. 13. 일. 늦은 2시



주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한 10월 행사 청년모임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구별에서
공존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인권과 연대를 위하여

이화여대 가정관 319호
1996. 10. 13. 일. 늦은 2시

주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10월 행사 청년 모임
주관 : 한국민중교회연합, 경동교회찬양대, 구미카톨릭근로자센터, 시화 일꾼의 집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장 및 상담 지원 활동 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안산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이화여대 총학생회,
서울교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공대 학생회,
서울대 법대 학생회, 연세대 법대 학생회, 건국대 공대 학생회,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
신노사관계 분쇄와 학생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고대 운동본부 '원손잡이',
인권운동대학생연대, 노동과 경제, 문화정치 *Vtopian*, 진보를 위한 청년 연대
후원 : 서울대 공대 신문사
유치 : 이화여대 총학생회

심포지움 순서

1. 심포지움 및 참가단체 소개

2. 강연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현황과 과제 : 양 해 우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3. 발제

-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 박 찬 민 (문화정치 Utopian)

- 외국인 노동자와 진보운동의 새로운 지평 : 박 성 호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4. 논평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최 정 규 (집행위원장)

- 한국노동청년연대 : 공 승 천 (정책교육국장)

- 노동과 경제 : 이 한 철

5.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 목 차 ·

1. 여는 글

인권과 연대의 희망이 실현될 때까지 p.4

2. 발 제 문

-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p.6

발표자 : 박찬민 (문화정치 Utopian)

- 외국인 노동자와 진보운동의 새로운 지평 p.19

발표자 : 박성호 (진보를 위한 청년 연대)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전반적 상황

1)아시아는 거대한 인력시장 p.28

2)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p.31

3)산업기술연수생제도 약사(略史) p.37

4)한국사회의 전반적 반응 (입장) p.41

4. 자 료

1)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 약사 p.46

2)외국인 노동자의 편지1 p.50

3)외국인 노동자의 편지2 p.52

4)벌금 200만원과 인간의 생명 p.53

5)이 땅에서 이렇게 죽어갔다 p.55

6)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p.57

7)고용허가제의 내용 및 예상효과 p.60

8)외국인 노동자 관련 자료 목록 p.72

9)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 p.80

10)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 주소록 p.82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의문스러워 질 때가 있다. 가끔 우리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 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문할 때가 있다. 실존이 운명적으로 자신에게 던지는 심각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침잠해들어 가 세계와 자신을 차단시킨 매마른 적막함에 빠져드는 것보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타자들에게 눈을 들려봄으로써 세계 속-자신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한다. 60~70년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핍진함을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 근대화의 일시적인 성공의 외양에 도취되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차별과 부당함을 간과한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며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재가 바로 어제의 우리자화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생존경쟁이 우리를 영원히 지속되는 새로운 시련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진보는 끊임없는 인간 삶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언젠가 패배자가 될

인권과 연대의 희망이 실현될 때까지,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불운을 조소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명령의 강제를 느낀다. 이것이 10년, 20년 전의 우리의 모습에 다름 아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둔감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옆에 이웃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타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국인 노동자 앞에서, 의혹과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가 간신히 얻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상실할지도 모를 황량한 성공을 심각하게 재평가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타자-외국인노동자의 위치로 우리가 또다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안간힘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취한 현실이 타자에 대한 억압과

강제와 착취에 의해서만 가능했다는 통렬한 반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적의에 가득찬 지대에 서 있다. 타자의 고통과 눈물의 대가로써만 자신의 안위와 웃음이 보장되는 비정한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배제와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만 한다. 타자를 우리 자신의 거울로 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먼저 외국인노동자에게 정당한 그들의 몫을 돌려주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우리의 시작은 외국인노동자라는 한국 사회의 이방인들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여기에서 그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외국인노동자 이외에도 사방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배제되고 차별되는 수많은 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명시적인 타자들에서 출발하여 내부의 은폐된 타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리와 차별이 제거될 때까지, 모두가 진정한 동등성에 도달할 때까지, 인권과 연대의 희망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꿈꾸고 사유하고 여기서 당장 행동할 것이다.

□ 문화정치 Utopian

■ 대표 김남언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박찬민 (문화정치Utopian)

I. 시작하며

언젠가부터 한국은 노동력의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노동자¹⁾의 현존이 사회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화의 한 쪽에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시행과 그 폐해에 따른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정부-기업간의 공방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임금차별, 극악한 노동조건, 문화적 편견 등을 시정 혹은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및 사

회운동 단체들의 노력이 있다. 소위 '세계화' 혹은 '전지구화'가 일반적 추세임에 비추어, 더 나아가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한국 경제 구조의 여하한의 개편이 얼마간 난망함에 봉착했다는 것에 비추어본다면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 확장·심화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비록 한국의 경우, 91년 '산업연수'의 형태로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가 길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²⁾, 국제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될 만큼 가벼운 문제도 아니다. 형태를 막론하고 양적으로 보아 '고국을 떠나 일하며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전세계적으로 1억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합법/불법을 떠나 16만 이상이 노동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단순히 산술적인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산업의 구조 및 노동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자본과 노동을 둘러싼 정치적 조건³⁾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그 변화의 지점을 포착하고, 그것으로부터 정치를 새롭게 사고하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인노동자는 선진국에서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정책의 강제와 제3세계로의 위험부담의 전가, 이에 따른 세계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의 맥락에 놓여 있다. 사회적 삶의 모든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는 '세계화'와 그에 대응한 '국가경쟁력'의 강력한 헤게모니가 판철되는, 최소한의 방어적 투쟁에 대해서마저

1)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migrant worker'의 번역어로는 '이주노동자' 혹은 '이민노동자'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8월 말 개최되었던 '국제 워크샵'이 채택한 주제, "세계경제구조정책에 도전하는 이주노동자"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주노동자'가 공식적인 용어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주' 혹은 '이민'이 함축하는 정착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한편 국적이나 민족(인종)과 관련된 시민들의 편견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로 통칭한다.

2)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이미 89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91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시행 이후 유입 효과가 포착되기 시작했고, 관련 문제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3) '자본과 노동을 둘러싼'이라고 했지만, 이 관계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공장을 중심으로 한 '계급대립'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계급대립에 인종적(민족적) 차이가 겹치고 있고, 좀 더 확장하면 성적 차이, 지적 차이의 문제가 복잡하게 얹히고 있다.

'계급(집단)이기주의'라는 공격이 아무런 저항 없이 정당화되는,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분할이 고착화되고 여기에 인종적, 성적, 지적 차이가 겹쳐지고 그 분할을 기형화하는 바로 그 맥락인 것이다. 이 맥락들은 운동이 그 위에서 '진보'를 말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다.⁴⁾

그간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하 외노협)를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제외한다면, 매스컴의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가십의 수준 역시 '인간적 연민의 환기'로만 한정되었고, 따라서 지금까지 부분적 산재 처리와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강제추방의 한시적 연기만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문제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외면당해온 사실로부터, 자신의 구미에 맞는 '공유된 대화'에 자족하고 있는 한국진보운동의 폐쇄성에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그렇지 않다. 수없이 반복되어 더이상 아무런 감동도 없는 이야기지만, 소위 '위기'는 더이상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착취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투쟁'이라는 최소한의 공통 지향 속에서 다양한 차원의 운동들이 어떻게 급진적 담론들을 생산하고 또 상승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실험·검증하는 것은 운동의 현재적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정연명령이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문제의식과 주장으로 이 문제에 개입, 발언하고자 한다. 인권의 문제의식과 주장은, 한편으로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이 인권의 불모지에 놓여있다는 현상적인 이유 때문도,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이 인권의 적용과 확장이 그 어느 장(場)보다도 용이하다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다. 양자 모두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제기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질문되고 대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도대체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인권의 제기가 '운동의

4) 이 조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함께 제출되는 다른 발제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적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정연명령'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해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주장이 '보호법 제정 촉구'로 대표되는 그 동안의 외국인노동자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결합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믿는다. 또한 이것이 반성적 전환이라는 운동의 내적 요구에 작지만 소중한 기여임을 믿는다. 물론 이 믿음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이번 심포지움은 (각종 캠페인들과 함께) 이 정당화의 맥락에 놓여 있다.

궁극적으로 운동은 '비판'과 '창조'의 결합이며, 이것은 외국인노동자와 인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비판'과 관련하여,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이 드러내는 문제들을 '확장적으로' 정식화하고자 한다.⁵⁾ 즉 외국인노동자의 '특수한' 상황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의 지배적 관계 유지와 재생산이라는 일반적 문제들과 연관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크게 보아 '노동력 관리와 임금', '차별과 배제의 구조'가 그것이다. 검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 '차별과 배제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여성' 문제가 동일한 논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⁶⁾ 한편 '창조'와 관련해서는 '비판'에서 확인한 결론들에 대해 어떠한 대안적 주장과 요구가 가능한지 '인권'의 시각에서 묻고 답하고자 한다. 이 때 '대안'은 희망하는 삶으로의 완전한 궁정의 형태가 아니라, 비판을 이어 창조의 방향성을 가능해보는 출발점으로서 제시된다. 따라서 우선은 부정으로서의 '반대'에서 출발할 것이고, 그 반대의 함의들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5)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가설들이기도 하다.

6)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논점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지 않다.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면, 유비가 가지는 한계 역시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와 여성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해보는 것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소극적으로 보아 많은 사안들이 단일한 패러다임으로 해석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이고, 적극적으로 보아 다양한 담론들 간의 접합 가능성, 실천운동들 간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믿음'에 상응하는 두 가지 기대가 있음을 밝히면서 다소 길어진 서두를 마감한다. 우선 '보호법 제정 촉구'로 대표되는 그 동안의 외국인노동자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결합, 연대할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하여, 이번 계기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운동의 방향성이 가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반성적 전환이라는 운동의 내적 요구에 작지만 소중한 기여일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하여, 최소한 이번 심포지움과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자신의 운동 담론들을 더욱 정초하고 세공하며 연대의 계기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비판의 지점들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은 현사회가 유지되는 비밀을 가장 적나라한 형태로 보여준다. 이 비밀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활용', '관리', '통제⁷⁾'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들이 갈등하고 화해하는 담론장에서 여과 없이 나타난다. '외노협'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들을 제외한다면,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주요한 세력은 정부⁸⁾, 기업⁹⁾, 내국인노동자¹⁰⁾이다.

7) 따옴표 안에 뒤인 이 용어들의 뉘앙스에 주의하라!

8)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은 '인력난의 값싼 해소'라는 자본의 이해에 부응해야 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상의 해결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노동부, 통상산업부, 법무부 등이 주요한 발언자이다. 최근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에 대해 통상산업부와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다.

9) 대기업은 이 사안에 전혀 관심이 없다. 문제는 산업 구조상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3D산업의 한계기업들에 집중된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인력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예컨대, 임금수준/근로환경 개선, 임금시간 연장, 생산기술 개선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값싸고 말 잘 듣는 인력'에 불과하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비용을 축소할 것, 통제를 강화할 것.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안만큼은 정부, 기업, 내국인노동자의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이라 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활용, 관리와 통제가 기업의 주도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대한 모든 입장들은 경제적인 어휘--=중소기업 인력난의 해소와 값싼 노동력의 공급--로 채색되고 있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제일담론에 종속됨을 의미한다.¹¹⁾ 이러한 조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들의 지위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과 저임금, 노동과정과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신체적인 폭행에서 문화적인 차별까지)을 감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로 무장된 이 담론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유포되고 또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시민'의 일원이

10)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작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직접 접촉하는 내국인노동자 개인의 태도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다. 큰 차이는 없다. 개개인들은 대부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크게는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에 주어지는 임금격차(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노조 가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의사소통의 결여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급단체들에 있어서도 그대로 전이되는 듯하다. 한국노총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초기에는 같은 입장이었다. 내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과 취업기회의 압박이 주된 반대 논리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노총마저도,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시행과 확대실시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 탄압에 의한 주체적 조건의 후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의 해소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한다는 논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동의는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외노협'의 결성과 활동을 계기로 민주노총의 입장이 '차별없는 근로조건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11) 물론 여기에 미약하나마 다른 담론이 개입하고 발언의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주로 내국인과의 차별 없는 근로조건의 보장 및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이라는 담론이 그것이다. '외노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호법' 시안이 그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아니라는 논리, 합법적 지위를 갖더라도 민족적, 인종적으로 다르다는 논리가 개입된다. 어쩌면 다소 부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나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 논리들은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절대적 명령 아래에 혹은 가로질러 명령의 폭력성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관리/통제되어야 할 사물로 인식, 처분되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는 민족과 시민을 앞세운 가치평가적, 차별적 분류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용인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는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제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활용, 관리, 통제해야 할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성 내부로 흡수될 수 없는(되어서는 안되는) 배제와 거부의 존재이다. 국가와 자본 나아가 일반시민들(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두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는 '노예' 혹은 심지어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기의식은 단순한 수사학적 항변이 아니다.

우리는 우선, '관리/통제되어야 할 사물'의 측면과 '가치평가적, 차별적 분류'의 측면을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양자가 현실적으로는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접합'되어 나타나는 것이지만, 각각은 고유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쪽으로 완전히 환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리/통제되어야 할 사물'의 측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양식에 해당되며, 특별하게 자본주의적 특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이는 끊임없이 노동력이 상품으로 전화되고 유지됨을 전제로 노동력을 관리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가치평가적, 차별적 분류'의 측면은 이데올로기 혹은 문화에 해당되며,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특정한 주어에 특정한 술어의 목록을 단선적이고 강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현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에서 보호받고 있는 '민족'과 '시민'의 혼구적 보편성¹²⁾

12) 현실적 갈등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한다는 의미에서. 민족과 시민은 현재 '세계화' 혹은 '지구화'의 추세 속에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일국적 차원에서는

이 그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양자는 서로를 보충하면서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다.

II-1. 노동력의 관리/통제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를 폭로하고 그들의 권리 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들이 보여준 것처럼,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은 그들의 '불법적' 지위로 인해 장시간¹³⁾의 노동과 저임금¹⁴⁾, 노동과정 및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폭력¹⁵⁾에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 더욱이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들의 '합법적' 지위¹⁶⁾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있었고, 95년 3월 이후부터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법정 노동시간, 최저임금, 산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⁷⁾ 그러나 존속을 전제로 한 '연수생제도'의 개선은 소위 '근본적 관리대책'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물론 합법화를 전제로, 즉 불법적 부분의 추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연수생제도를 대체하는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

여전히 내적 갈등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13) 국적의 차이, 법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평균적인 노동 시간은 다소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들 대부분은 법적 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그들과 거리가 멀다.

14) 역시 국적과 법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임금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재생산가치'에 미달하는 임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15) 불법(좀더 고성하게 미등록) 상태를 악용한, 작업장 이탈 방지를 빙자한 여권압류, 감금, 폭행, 임금체불이 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국인노동자는 많지 않다. 설동훈의 논문에 게재된 개별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50%에 가까운 '아무런 문제없다'는 대답은 객관적 조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감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6) 법에 따르면, 그들은 이른바 '근로자'가 아니다.

17) 노동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995.2

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선은 '고용허가제'는 '기업부담의 증대', '현장이탈 예방불가', '고용의 유연성 약화', '장기정착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을 반대 논리로 하는 통상산업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 및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병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하게 설사 입법이 현실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 사회의 '노동력 관리'의 기본적 룰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고용/취업의 합법화', '고용절차의 공공화', '관리의 합법화'를 풀자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실시는 현실적 갈등, 나아가 적대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현 사회에서 유지되는 생산의 특정한 방식, 곧 임여노동 착취의 특정한 방식은 노동력의 특정한 존재형태의 재생산에 기초한다. 임여노동의 자본주의적 착취방식은 임여가치의 착취이며, 노동력의 자본주의적 존재형태는 궁극적으로 임금노동이다. 임여가치의 착취는 단순히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노동시간으로 환원되어 산술적 계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노동과정에서의 규율, 임여노동의 강제적 착출이 문제이다. 맑스가 '공장의 전제

정'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했던 '절대적 임여가치의 생산'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이 '공장의 전제정'은 극적이며, 또한 가시적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 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노동시간, 직종 자체의 구별 및 동일 직종 내에서의 작업 배치의 차별 등에서 나타나는 내국인노동자의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강도, 덫붙여 노동과정 안에서 혹은 밖에서 행해지는 신체적 폭행, 감금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공장의 전제정'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현재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 노동시간, 노동강도, 폭력 등 발견하는 사례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적 지위, 그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의 성격, 심지어 노동생산성(주로 언어나 숙련도)의 차이 등이 그 주된 이유로 설명되는 한, 외국인노동자의 현재 조건은 불가피한 것이거나 심지어 정당한 것이 되고 만다. 공장의 전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양산업과 첨단산업,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가로질러 놓여 있는 일반적이고 연속적인 노동 조건이다.¹⁹⁾ 이는 심지어 근로기준법의 합법적 적용 속에서도 판철되고 있다.

노동력 관리는 노동의 규율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 노동의 규율은 개별적인 공장 내부에서 혹은 가장 구체적인 노동과정에서 개별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것이지만, 규율의 강제가 성공적인가의 여부는 개별 노동자들이 그 규율을 감내할 수 있는 혹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은 단일하지 않다. 노동운동의 쇠퇴 속에서 규율 거부의 주체적 힘이 미약하다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한편에서의 적절한 임금수준과 다른 한편에서의 한계화의 위협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²⁰⁾ '적절

¹⁸⁾ 이러한 판단은 현재의 조건에 비추어 '고용허가제' 자체의 개선 사항을 무시하려는 것도,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던 그 동안의 투쟁들을폄하하려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국가와 법이 단순히 계급지배의 기능적 도구라는 도그마에 입각한 것도 아니다. 국가와 법은 사회로부터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오히려 거꾸로 사회의 특수한 이해들과 갈등들이 정치적으로 원화 또는 해소되는 메카니즘 혹은 장(場)에 가깝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국가와 법은 '본질적으로' 부르조아직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입법을 포함한 국가의 행위가 어떻게 현실적 갈등들을 원화시키는지, 이 원화의 과정에서 갈등의 수준이 어떻게 제한되고 또 은폐되는지를 드러내는 '정치비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고용허가제'는 노동력 관리의 자본주의적 방식을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 정당화, 은폐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판은 국가와 법의 한계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더욱 날카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같은 의미에서 '보호법 제정 촉구'는 '고용허가제'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

¹⁹⁾ 물론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가 위에서 말한 차이에 따라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는 현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규율의 강제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규율의 거부가 일반적임은 분명하다. 비록 불행히도 현재 노동운동의 일반적 쇠퇴로 인해 강제와 거부 사이의 불균형이 극히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 임금수준이란 말은 국가경쟁력의 구호 아래 임금동결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자국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임금수준은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과 심지어 폭행까지도 감내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편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한계화의 위협은 규율의 강제와 거부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한계화의 위협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의 항상적 공급'이라는 정언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²¹⁾ 맑스가 자본주의의 일반 법칙으로 설명한 '산업예비군'의 창출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현재 일반적인 사회보장의 포기와 후퇴 속에서, 자본의 합리화와 유연화 속에서 더욱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협소한 의미의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기 위해 노동은 최대한 분할되어야 하고, 이 분할에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개입한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논리 외에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혹은 그들이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은 국내적 산업예비군의 고갈과 그 해소의 특정한 방식을 동시에 지시한다. 이른바 인력난에 허덕이고, 외국인노동력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소위 '3D산업' 혹은 '사양산업'에 국한되고 있고,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감원 파동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는 현재 자본 운동의 일반적 추세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는데, 바로 유행처럼 번져가는 첨단산업화, 탈산업화, 탈지역화의 맥락에서도이다. 이러한 맥락은 노동자의 조건에서는 한편에서는 숙련(교육과 훈련)의 차이, 민족과 인종의 차이, 성적 차이가 곧바로 절대적 분할이 됨을,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위치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른 고용의 불안과 위험이, 곧 생존의 문제가 분할된 노동자 개인

²⁰⁾ 또한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조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II-2. 차별과 배제」에서 후술하겠다.

²¹⁾ 소위 '첨단산업화'와 '탈산업화'로 명명되는 현재의 일반적 추세에 있어서 자본의 수익의 원천이 점차 첨단기술이나 금융으로 이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자본 최대의 꿈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배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첨단산업화'나 '탈산업화'의 구호는 많은 경우 허구인데, 감당하기 어려우나 포기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국제적 관계에서 탈산업화의 한 쟁인 '탈지역화'는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화된다.

들 간의 경쟁의 압력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생산의 불균등 성과 노동시장의 분할에 따라 실업률 0%의 조건에 있지만, 이는 고용(=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의 규율을 감내한다는 조건 아래서이다. 특히 현재 60%에 달하고 있는 불법(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고용과 생존의 문제가 '강제송환'이라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한계화 위협에 놓임에 따라 규율의 감내는 더욱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노동의 규율, 산업예비군, 값싼 노동력의 항상적 공급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상수이면서, 노동운동의 쇠퇴와 자본의 일방적 힘의 우위 속에서 더욱 폭력적인 방식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가장 극악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협소한 의미의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기 위해 노동은 최대한 분할되어야 하고, 이 분할에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개입한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논리 외에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혹은 그들이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II-2. 차별과 배제

현 사회에서 한편에서 통합의 논리, 다른 한편에서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광범위하다. 숙련(교육과 훈련)의 차이, 민족과 인종의 차이, 성적 차이는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가치평가되며, 특정한 가치 속으로 통합된다. 이 '가치평가적 분류/통합 체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서 간주되고, 평가 절하된 부분에 대한 평가절상된 부분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거의 무의식적 기제로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에 내재해 있는 지배이다. 이 가치평가적 분류체계, 차별과 배제의 구조적 논리 중,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민족'과 그에 기반한 '시민성'이다.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고, 관리/통제되는 주된 방식이었던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는 이 민족과 시민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낸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자본, 상품, 노동력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이것의 성공이 민족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 시민권을 보장하는 근거였다. 그런데 현재 물질적인 수준에서 이 근거가 흔들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금융자본의 자립화를 보장하는 실물적인 부분의 가치 창조가 1억을 육박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정부와 대기업은 한계기업으로 표현되는 중소기업에 어떠한 적극적인 보장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방조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입된 것이 바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며, 주지하다시피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그들이 '합법적' 시민, 민족적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당하고 있다.

여기서 민족과 시민성은 바로 물질적 수준에서 균열되고 있으나, 여전히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면서 그 균열을 봉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철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회로부터의 끊임없는 소외를 내적 본성으로 하는 국가가 사회로 다시 뿌리를 내리는 '국가의 사회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특별한 저항 없이 관철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성립되었던 민주주의로서의 시민성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한국의 경우, 이러한 시민성의 상징적 표현이었던 노동운동의 쇠퇴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주체적 저항으로서)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후퇴와 동의어이다.

민족(그 실체로서의 국가)을 유일한 주체로 내세우는²²⁾ '국가경쟁력 강화'의 논리는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이 경제적 효율성으로 해독 된다는 의미에서 목적과 수단의 전도의 극치

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강력한 일반의지의 형성 속에 특정한 개인/집단의 특수한 의지들이 억압적으로 소멸됨을 나타낸다. 일반의지 자체가 특수한 이해들과 대립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반의지의 형성에 있어서 특수한 이해들은 아예 발언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는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 강력하게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통합된다. 그들이 유입되고 관리, 통제되는 맥락이 바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그들의 권리는 곧잘 무시되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합법적인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크지 않다. 만일 그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조건은 여전히 현재와 같은 논리에 종속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의 울타리를 넘어 민족(인종)적 차이에 관한 한국시민의 편견은 그들을 사회적 주변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하다. 외국인노동자는 이렇듯 민족적 통합력의 물질적 근간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차원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은 의외의, 그러나 상당한 구조적 동일성을 가지는 사례가 유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양과 질 모두에서 시민성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는 존재, 즉 '여성'이다.²³⁾ 우선 여성은 외국인노동자와 동일하게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중요한 노동을 제공한다. 때로 이 노동이 찬양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성이라는 폐쇄적 공간에 유폐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될 때 뿐이다. 또 때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고무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값싸고 통제하기 쉬우며 유연한 공급이 가능한 노동력이 요구될 때 뿐이

23) 사실 이러한 유비를 위한 사례는 사회의 모든 소수자가 가능하다. 예컨대 어쩌면 외국인노동자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가져오는 것은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특수한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2) 모든 개인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다. 외국인노동자가 그들의 피부색과 언어로 인해 차별받는 것처럼, 여성의 성 자체가 차별의 표지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요구가 법의 테두리에 제한되는 것처럼, 여성들의 평등 요구는 형식적인 법적 보장을 넘어서지 않는다.²⁴⁾ 외국인노동자의 발언이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여성의 발언은 봉쇄되거나 아주 특수한 것으로 치부된다.....

III. 창조를 향해 — 인권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이 드러내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상수인 노동의 규율, 산업 예비군, 값싼 노동력의 항상적 공급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세계체제의 일반적 추세 속에서, 특히 세계체제의 위험부담이 전가되고 집중되는 (신흥공업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서 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민족적 차이를 근거로 노동의 내적 분할을 합리적으로 고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의 임금적 성격의 유지와 재생산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국가경쟁력으로 표현되는 민족과 시민의 보편성이 내부적 차별과 배제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 등을 보여준다. 여기에 상황을 역전시킬 현실적 힘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비극적 사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방어적 투쟁마저도 '계급(집단)이기주의'로 몰려 용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하거나 소극적인 소리는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인권은 인간이 지닌 어떠한 특성에도 구애됨이 없이 보편적으로 관철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이 지닌 이러한 무차별성은 인권이 인간의 동등성을 그 개념적·현실적 기반으로 해서만 정립될 수 있

24) 이 점에서 고용허가제와 남녀고용평등촉진법은 얼마나 유사한가.

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인간적 동등성을 확보하고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현실의 어떠한 장애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일국적인 이해 관계나 일국 내의 계층적 이해들도 인간의 본질적 동등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은 현실의 경제적 한정 요구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또한 차별과 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무기이다.

현대 사회의 구조적 기반인 자본주의 자체가 끊임없이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자신의 진보성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평등성의 범위와 깊이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기 작동의 근간인 시장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간적, 시간적 경계도 뛰어넘으며, 지상의 모든 영역을 화폐의 동질성에 의해 규정되는 시장으로 전환시킨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상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자본주의의 정치적 통치기제인 국가는 역설적으로 장애로 현상한다. 특히 자본의 현재적 추세에서 국가는 한편에서의 세계화와 다른 한편에서의 민족적 통합력의 유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권과 시민권의 동시적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자본주의가 구축해온 인간적 동질성을, 거꾸로 자본주의적 현상에 대한 무기로 전환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 현실과 분리시킨 인간의 동질성과 권리를, 자본주의와 무관한 담론적 체계로 형성하고 동질성과 동등성을 그 자체로 급진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무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인권의 근간인 평등이 다른 한 쪽에서 자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점, 양자 어느 한 쪽의 유보나 제한이 필연적으로 다른 한 쪽의 그것을 낳는다는 점에서 인권을 제한없이 확장하고자 한다. 이 때 인권은 어떤 유토피아적인 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선 저항으로서, 반대로서 출발한다.

III-1. 인간의 관리/통제 대상화 반대

사회적 생산의 자본주의적 질서와 그것이 전제하는 노동의 임금노동적 형태의 유지와 재생산에서 드러나는 것은 노동력이, 곧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의 '사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때 사물로 나타난다는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매매의 대상인 상품으로, 매매 이후 구체적 노동과정에서는 자본의 유기적 부분인 가변자본으로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상품과 가변자본으로의 사물화하는 비단 협소한 의미에서의 시장과 공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삶의 전 영역으로의, 전지구적 차원으로의 자본간 경쟁의 확대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법칙을 강제적인 외적 법칙으로 전화시키고 예외없이 관철시킨다. 자본은 인간을 자신의 요소로 만들면서 동시에 대상화하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모순이 자본과 인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없다.

자본과 인간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임금(의 권리)이다. 현존 질서를 전제하는 한, 임금은 인간이 자신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생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최소한 생존할 권리이다. 그런데 이 수단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여하한 형태로든 참여함으로써만 획득된다. 비록 자본과 인간은 모순관계에 놓여 있지만, 인간이 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 그 모순은 잠재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임금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로운 시장법칙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운동의 내재적 법칙에 좌우되듯, 거의 항상 인간의 재생산 가치에 미달한다. 이 재생산가치에의 미달은 임금이 '노동의 댓가'로 주어진다는 것과 따라서 임금을 얻기 위한 노동과 자신의 재생산을 위한 노동이 항상적으로 분리된다는 것, 특히 임금을 얻기 위한 노동은 전적으로 자본

의 통제 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한다.²⁵⁾ 임금이 노동의 댓가인 한, 노동이 임금에 종속되는 한 인간은 자본이 행사하는 대상화/사물화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다룬는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우선 그 동안의 투쟁들이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호법 제정 촉구에 운동의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고, 역으로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투쟁의 흐름을 법적 태두리 내부로 유연하게 해소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다. 여기가 외국인노동자운동의 끝인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노동할 권리의 해석을 둘러싼 투쟁을 다시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현 사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는 '노동할 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최소한 '노동할 권리'는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을 권리이다. 또한 노동한 만큼 그 댓가를 받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곧 임금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 '노동의 댓가'로 주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에 놓여 있다.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곧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은 현 사회의 철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 노동은 특수하게 자본주의적 생산에 종속된 노동, 곧 잉여가치 착취를 보장하기 위해 규율이 강제되는 노동이다. 또한 이 노동은 산업과 직종의 불균등 발전에 따라 숙련의 차이, 민족과 인종의 차이, 성적 차이가 절대적 분할로 고정되는 그러한 노동이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동은 산업예비군의 존재로 인해 '노동할 권리'가 항상 침해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이다. 규율을 감내하든지 노동하고 임금받고 살아갈 권리를 포기하든지

25) 물론 자신의 재생산을 위한 노동이 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노동이 우선 자본이 만들어내는 상품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또한 자본이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그러한 노동이다. 후자를 선택할 수 없는 이상 '노동할 권리'는 '노동할 의무'이다.

의무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종속된 것으로서의 노동은 여전히 비인간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내포하는 노동의 규율과 실업의 위협이라는 직접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규율이 완화되고 실업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현 사회에서의 노동은 여전히 비인간적이다. 왜냐하면, 이 노동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사물로서, 즉 적절히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값싸게 구매되어야 할 상품이며, 노동과정에 합리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가변자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가 '노예'로 혹은 심지어 '기계'로 인식되고 처분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들의 노동에 대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는 이 사실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거꾸로 '외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내국인노동자의 삶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노동할 권리 요구한다. 동시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노동할 권리가 임금의 권리, 노동의 의무로 제한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노동을 거부하며 반대한다. 반대로 우리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노동이 노동하는 인간의 자기 가치 실현에 복무해야 함을 주장하고 요구한다.²⁶⁾ 우리는 이미 '인간의 자기 가치 실현'이 노동의 외부에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노동의 외부에서 실현되는 자기 가치가 고통으로 얼룩진 노동으로부터 단순하게 이탈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동시에 역설한다. 노동으로부터의 이탈은 그것이 노동의 댓가에 근거하고 있는 한 진정한 이탈이 아니다. 이 이탈의 힘은 현존하는 노동 자체의 급진적 변형을 향해 들려져야 한다. 이 변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만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서로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III-2. 모든 형태의 차별 반대

인간이 특정한 집단으로 분류되고 가치평가되며, 현실적 차이들과 무관한 단일 가치로 통합되는 것은 바로 사회의 지배적 질서가 유지, 재생산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특히 근대 이후 민족과 시민은 이러한 한편에서의 통합과 다른 한편에서의 차별, 배제의 논리가 판결되는 전형이다. 이 때 전형의 의미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데, 왜냐하면 민족과 시민이외의 다른 보편성이 형성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시민이 가지는 급진적이고 평등적인 합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시민 개념은, '인간' 개념이 그려하듯이, 과거의 신분제적 질서를 대체하는 투쟁의 산물이며 특히 절대주의 국가와의 대립선상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민은 단순히 '시장에서의 소유자 개인들의 동등성'이라는 합의에 국한되지 않으며, 훨씬 역사가 오래된 민주주의적 맥락이 결부되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제도적 장치라는 사물화된 의미가 아니라 주체적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급진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요소를 함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이후 민족적인 틀에 국한되고 국가와 법에 종속되는 과정과, 그것이 고학화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26) 이러한 요구가 필연적으로 현재의 소유형태 및 그것의 조절형태를 문제삼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소유형태 및 조절형태를 대체하는 집단적 소유형태 및 계획적/자주관리적 조절형태가 그 긍정적 대안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역사적 제한을 수용해야 한다. 아마도 노동 자체의 변형을 향한 실질적 움직임이 개시되기 전에 소유/조절형태를 긍정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역사적 경험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에 저항하는 출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에 저항하는 것은 곧바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합의는 결정적이지 않

다. 특히 가장 급진적으로 평등을 요구했던 맑스주의 운동이 실패로 드러나고, 그에 따라 평등의 의미가 진부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에서 그러하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등이 현존 질서 내에서의 평화적(다원적) 공존으로 제한되어버리는 조건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평등의 합의를 현존 질서를 넘어서는 것으로 복권해야 한다.

이는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이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 외국인노동자운동이 요구하는 평등의 합의는 무엇인가?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은 무엇인가? 유비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넘어 여성운동이 요구하는 평등의 합의는 무엇인가? '남성과 동등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경제적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성적 문화가 만들어낸 지배적 속성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노동할 권리'가 '노동의 의무'에 제한되는 것처럼, 평등의 요구는 현재의 일반적 노동 조건을 온존시키는 한에서의 사회로의 포섭이 아니어야 한다.²⁷⁾ 따라서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의 요구는 현재 사회적 삶을 폭력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제일 담론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비판하는 것, 그 담론의 위력에 기대고 있고 또한 근거가 되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²⁸⁾

우리는 초국적 자본의 운동에 의해 이미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국경과 민족의 틀이 이미 낡은 것으로 판단한다. 동시에 그 틀의 파괴가 자본의 운동에 고유한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에 반대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성의 고착화, 제3세계로의 위험부담의 전이, 보편적 영유 대상의 배타적 소유 대상

화(상품화 및 이윤추구 대상화), 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의 폐지와 동일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인간의 삶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불평등 구조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각각의 문화적 차이들이 활성화되고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만 인간이 평등한 존재임이 증명될 것이다.

이렇듯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평등의 요구가 기존의 허구적, 폭력적 보편성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과거 '시민' 개념이 가졌던 '주체성'의 회복을 동시에 요구한다. 기존의 보편성을 대체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존 질서로부터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체성의 회복은 광범위한 형태의 수평적 '연대'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착취와 억압과 지배에 대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여 각각이 그려내는 미래의 사회적 삶을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V. 마치며 : 외국인노동자운동의 방향성 — 암시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인간이 관리/통제되어야 할 사물로 인식, 처분되고 있다는 점과, 이미 그 정당성이 기반에서 흔들리고 있는 민족과 시민의 이데올로기가 차별과 배제의 구조 속에 온존하고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또한 후자가 전자에 강력하게 결합되면서 전자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 모두는 비단 외국인노동자의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관리, 통제되어야 할 사물화는 사회적 삶의 자본주의적 질서가 놓는 일반적 귀결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논리가 공장을 넘어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 이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인간임을, 자유로운 존재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차별과 배제의 구조 역시 마찬가지다. 고유하게 자본주의적 특성이라 할 바는 아니

지만, 근대 이후 형성된 지배 질서의 근간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주장은 언제까지나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각각에 대응하는 창조와 관련해서 인권을 새롭게 해석하려 시도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권'을 중심으로, 노동이 자본주의적 생산에로 종속, 그 댓가로서 임금의 권리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러한 한에서 우리는 노동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보다 공정적인 형태로 말하자면 노동은 인간의 자기 가치 실현 속에서만 의의를 회복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현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권리의 보장마저도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 요구는 이미 성장의 신화가 붕괴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밥그릇의 크기'에 포섭되는 것이고, '크기' 운운 속에서 임금의 권리 축소는 기정 사실이기 때문이다. 설사 임금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한정될 것이고, 대다수 노동자의 주변화를 통한 분열이 고착화될 것이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또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러한 분열의 바로미터이다. 분열에 저항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획득하는 효과적인 한 방안이 바로 노동권의 제해석이며, 이것의 실현을 위한 투쟁 여부에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권이 이렇게 급진화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분열(차별과 배제)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장 광범위한 차별구조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의 문제다.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이 보여주는 민족적, 인종적 차별구조 역시 동일하다. 아마 더 많은 소수자(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발언권의 승인의 부재라는 의미에서)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례에서 이미 보았듯이 차별의 극복은 단순한 다원주의적 승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국인과 동등한'의 의미가 현존 질서에의 동등한 종속이 아니듯이, 모든 소수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역시 기존 보편성으로의 포섭이 아니어야 한다. 오

히려 기존 보편성이 가지는 허구성을 폭로함을 전제로 새로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평등의 권리는 더욱 급진화되어야 하며,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다시 외국인노동자운동으로 돌아와서, 비록 추상적이나마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전망을 도출해보자.

하나는, 국내노동운동과의 연대이다. 이는 현재 제한적으로 추진중인 '자매결연'이나 더 나아가 국내 노조로의 조직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국인노동자운동이 노동운동 일반의 가장 급진적인 부분으로서, 내적 분열과 체제로의 동화를 거부하는 상징으로서 정립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외국인노동자가 어느 노동단위보다도 가장 착취받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처지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노동의 분열과 자본에의 포섭을 지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의 현존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도덕적 건강함을 지시하는 최고의 척도이다. 물론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면, 외국인노동자운동이 이러한 상징성을 획득하는데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선 [외노협]을 중심으로, '보호법 제정 촉구운동'으로 대표되는 그동안의 외국인노동자운동 자체가 더욱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를 넘어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외노협]의 고립된 시도로 성공할리는 없다.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 특히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한국 노동운동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연대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에 완전히 포괄되지 않는, 그러나 그 자체로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폭로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들과의 연대이다. 특히 여성운동이 주목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와 여성은 시민성 내부에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다. 즉, 특정한 방식으로 그 내부로 포섭되지만 언제나 차별받고 배제되는 그러한 존재이다.

27) 이 지점에서 평등은 강력하게 자유를 요청한다.

28) 민족적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차이를 무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최소한 인식상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으며, 보다 긍정적인 형태로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는 조건을 달고 '차이의 공존'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민족형태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와 대기업 모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역시 시민의 절반을 구성하고,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빠질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구조에 종속되며, 많은 경우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유폐된다. 여성의 이론바 사회활동이란 한국에서 아직까지 무수한 폭력에 대항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그것도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잣대에 따라 처분된다. 외국인노동자와 여성은 이러한 위치로 인해 공히 현 사회에서의 '평등'의 의미를 결정지으며, 특히 새롭게 구성해야 할 '공동체성'의 단초는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 문제의 해결로부터 도출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 간의 거리는 단지 현상적으로 느껴지는 감(感)으로 멀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형태의 연대를 위해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넘어아 할 난관은 앞서 말한 국내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놓여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리라 예상된다. 특히 여기서는 이론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며, 성적 문제와 민족적, 인종적 문제가 중중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결합되는 어떠한 실천적 경험도 없었다는 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모색은 시작되어야 하고, 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전망을 말하면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을 제시한 듯하다.²⁹⁾ 또한 문제의 해결을 '연대'의 가능성에 전가하는 듯한 인상도 지울 길이 없다. 무릇 연대란, 상이한 담론들과 실천전략들이 상호작용하고 변형되는 과정에 맡겨지는 것 이지만, 특정한 '주체'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외국인노동자운동이 얼마나 자신을 주체로 형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노력이 '고용허가제'의 실시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부가 추진 중인 고용

허가제가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통제력 강화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노동법 적용', '사회보장법의 차별없는 적용', '노조·사용자·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의 설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노동허가제 실시'는 제한없이 요구되고 관철되어야 하는 최소치이다. 더 나아가면 (약간의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지만) 외국인노동자운동의 기본적 논리가 어떻게 '약자 보호를 위한 청원'의 수준을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일 것이다. 특히 '청원'이 항상 국가권력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서 그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피와 땀이 경우 상 밀의 부스러기로 돌아오는 운동의 현실에서 '청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더 많은 고충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외국인노동자운동 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적 운동의 역사가 가르치는 뼈아픈 진실이다. 외국인노동자운동이 착취와 지배의 권력 자체를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 시대 자유와 평등의 함의를 가장 급진적으로 제기하는 그러한 담론을 생산하는 운동의 거점이 되기를 지금 여기로부터 기대한다.

29) 맥락의 차이로 인해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다. '국제연대'의 문제다. 이는 함께 제출되는 다른 발제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진보운동의 새로운 지평

박 성호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1.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이해

1) 이주의 시대¹⁾

이주(이민)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냉전이 막을 내린 후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93년 말 전세계에는 1625만 명의 난민과 망명자들이 있었다.(이는 그 전 해보다 100만명 정도 줄어든 숫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UN이 정한 난민의 자격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난민에 준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외된 것인데, 준난민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2300만 명이 된다. 여하간 1993년 현재 고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의

1)이 부분은 유엔사회개발연구소에서 발간한 95년 보고서인 "벌거벗은 나라들-세계화가 남긴 것"의 자료(이하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95년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수는 1억에 가까웠다. 주요 이민을 배출하는 곳은 중남미, 남아시아, 동유럽, 북서아프리카, 발칸지역 공화국들, 구소련의 공화국들이다. 그리고 주로 이민을 받는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 일본, NICs 등이다. 지역과 국가를 간략히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이주'라는 현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량이주의 배경과 함의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레이건과鄧小平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전세계적으로 강요된다. 이는 제3세계에 정치-경제적 위협과 원조라는 유인으로 전세계화되어갔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관철 결과는 역설적이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따랐던 국가들은 경제파탄을 경험한 반면, 신자유주의 정책에 끊임없이 저항했던 국가들(NICs)은 오히려 성장을 이루었다. 지구화는 지구촌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때때로 이론화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계적 불평등구조의 심화, 제3세계의 절망, 그리고 이러한 바탕 하에서의 전지구적 정치-경제적 질서의 재편(지구화)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의 새로운 현상의 하나가 '대량이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다.

포드주의의 위기와 브레튼 우드 체제의 붕괴, 또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70년대 말이래 '탈조절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는 세계체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일국적 수준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들을 낳았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떼어놓고 보자면, ① 세계적 차원의 잉여 산출 위기의 불파를 하기 위해 남쪽 나라들의 시장과 거의 절연되어 있는 특유의 시장들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북과 북의 교환이 교환의 본질적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²⁾과 ②요하임 비숍이 현 세계자본

2) 재화시장은 세계무역의 1/4 정도만을 차지할 뿐이며, 또 세계무역은 기본적으로 정보, 통신, 금융부문의 고도기술에 근거하는 서비스의 교환으로 변화하였다. 정보통신,

주의를 일컬어 '카지노 자본주의'라 불렀듯이, 70년대 말이래 생산적 목표들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실물적 투자는, 점점 더 자립화하는 투기의 부수적 효과로서 격하되었다는 것³⁾(제3세계의 자본주의 중심국들에 대한 채무 증가와 이자)과 ③그리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도 '실업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과 ④제3세계나 구 사회주의권 역시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자본주의 경제 질서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본질적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불안요소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의 '대량이민'이란 문제를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저개발국의 대량이민 현상은 저개발국의 무능을 보여주는 반면,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대량 실업 현상과 이민 규제 강화 정책기조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 역시 이 문제에 관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⁴⁾

서비스, 폐기물 처리, 환경 등의 부문은 세계자본의 잉여산출의 새로운 장으로 개척되어가나, 여기서 제3세계의 중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3) 1991년 세계무역액은 3조 5300억 달러였다. 이 실물적 토대 위에서 대략 5조 4000억 달러의 전통적인 금융거래(예금, 주식거래, 연금증서거래, 은행신용)가 행해졌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거래소 내에서 또 거래소 외부에서 거래되고 통계적으로 포착되는, 파생금융수단의 국제적 거래금액은 1991년 약 7조 9679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서들은 빈번히 회전하기 때문에, 지금(1993년) 국제금융시장에서 1일 거래액은 대략 1조 달러가 되고 있다. 국제금융거래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전체의 국내총생산 가치를 능가한다.

4)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95년 보고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 국제적 이민에 대한 대응은 그것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좋아하는가 혹은 싫어하는가와 관계없이 이민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더욱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중에서 제일 아심찬 제안은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유사한 협정, 즉 '이민정책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Migration Policy)'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 예상할 수 있는 장래에 그러한 협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 예컨대 종남미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그러나, 위와 같은 파악은 다소 피상적이다. 왜냐하면,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무능과 저개발국들의 무능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질서(지구화)를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자본들의 자립화는 실물적 보장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치가 창출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주 노동자들'의 몫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량이민'이라는 현상은 저개발국의 절망에 대한 표현이자,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무능의 표현이지만,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가는 과정의 표현인 것이다. 이는 서유럽이 아프리카와 동유럽, 구소련을 포섭해갈 것이라는 것과 일본과 NICs가 중국, 동남아시아를 포섭해갈 것과 미국, 캐나다가 중남미를 포섭해갈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저개발국이나 주요자본주의 국가 모두에게 하나의 위기를 던져준다. 즉, '국가성'의 위기, 좀더 국내적으로 얘기하면 '시민권'의 위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적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국가는 상품, 자본,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행위자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구화라는 흐름은 세계경제의 불균등 발전과 카지노화와 함께 노동력 이동이라는 하나의 불가역적 경향을 낳았고,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 차원의 '국가성'의 위기로, 좀더 국내적으로는 '시민권'의 위기를 낳았다. 이는 부르조아 국가의 '노동권'에 대한 인정이 '시민권'이란 이름으로 세계적, 일국적으로 정당화되었다(합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현재, 실제 가치창출

유럽연합의 원조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는 (...) 두 가지의 간단한 목표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난민으로서든 혹은 국도의 가난에 직면하여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든, 어느 누구도 이민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 그리고 이민자 자신을 위해서도 이민은 가능한 한 고통스럽지 않고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온화한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 국가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란 부분이 '시민권'의 영역 밖에서(즉, 이주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져가는 경향이 지칭하는 것은 '시민권'이 '노동권'을 배제함으로써 '노동권'을 제약하지만, 그 '이주노동자'의 실제적 역할로 인해 배제는 포섭의 양상한 표현이며, 이것은 하나의 '위기'(시민권의 위기)를 낳고 있다. 이는 노동운동이 대처해야만 하는 하나의 국면을 형성한다. 즉, 이제 노동운동은 방향성과 조직형태, 활동양식에 있어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불균등화되고 파탄적인 세계적 차원의 자본의 흐름에 스스로 (정부-자본-노동운동이라)는 일국적 트라이앵글 속에서) 일조하는 위치로 진학할 위험에 놓일 것이다.

2. 남한의 특수성 - '진보의 신화', 그 세계적 차원의 '보수성'

남한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신자유정책을 업은 지구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저항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이는 근대화론⁵⁾의 역설적 성공으로 드러나며, 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국가경쟁력 강화')가 형성되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던 유혈적 테일러리즘은 진보의 신화가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이는 곧 근대화론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러나, 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의 대약진으로 실질적 임금향상과 정치-사회적 권리의 신장을 낳았다. 이것은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진보의 신화'를 부활시켰다. 즉, 90년 이후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무소불위의 '사회적 합의'

5) 근대화론은 성장과 진보(복지와 정치-사회적 권리의 신장)가 함께 간다는 전제 속에 정당화되었던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데올로기였다. 이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이데올로기와 동전의 양면으로, 서로 상보적으로 세계체제를 정당화하는 기제였다.

는 바로 '경제적 근대화' 없이는 '정치적 근대화'가 없다는 '근대화론'의 부활을 확증해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인식이 가지는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인식이 가지는 '보수성'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즉,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지구화 경향 속에서 국민이란 이름으로 모든 시민은 국가화⁶⁾되고, 국가적 경쟁상태의 설정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모든 다른 국가, 즉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자기존재의 위협이자 체온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바로 이러한 위치에 '외국인 노동자'가 놓여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은, 한편으로는 남한 자본의 필요⁷⁾에 의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구화가 낳은 저개발국의 폐폐가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남한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만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일국적 법의 테두리를 움아매면서 '값싼 노동력'이라는 자기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다. 이는 지구화 속에서 '국가화된 사회적 합의'가 당도하는 당연한 목적지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극단적 확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만이 산업기술연수생⁸⁾의 모집, 알

6) 소위 "나의 경쟁 상대는 독일 주부입니다."란 식의 개념의 능력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동일시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지구화라는 국면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의 정치적 분할을 형성시킨다. 문제는 이러한 분할에 대한 동일시하기보다는 이러한 분할이 던져주는 지평이다. 즉, 발생하는 문제는 '지구적'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적 지평은 '일국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보운동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정부-자본-노동운동'의 트라이앵글 속에 지구적 보수화로 이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남한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택한 태생적 한계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중소자본에 대해서는 어떤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 오지 않았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는 해결책이 등장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지원금'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균형있는 설명은 남한 자본의 성장, 산업의 구조조정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자연, 남한 자본의 해외 진출, 올림픽 등에 따른 해외에 알려짐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사인의 성격의 지구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므로 생략한다.

8) 이런 식의 합법화 역시 세계에서 남한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선, 연수, 사후관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맡아왔다는 것과 1996년도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주관 업무를 통산산업부와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으로 이양된다는 것에서 가능하다. 즉, 정부와 사용자들만의, 더 정확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만의 요구로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루어왔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만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는가?라는 문제에 답을 하면, 사태는 좀더 분명해진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역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민감했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외국인 상담·지원 단체에 위탁할 뿐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리고, 민노총 역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도입과 '차별 없는 대우'를 내세우지만, 1994년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확대 실시에 대해 가시적 저항은 전혀 없었다. 즉,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 인력난이 극심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협의를 벗기 힘들다⁹⁾.

이는 앞서 살폈듯이, 사안의 대소를 떠나 그 인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안의 지구적 성격은 그 대처에 있어서도 지구적 대처를 요구한다. 지구화의 가속화는 '정부-자본-노동운동'이란 트라이앵글 속의 사고만으로는 노동운동 간의 세계적 분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심지어 노동운동 간 세계적 차원의 대립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남한의 강력한 국가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부터 남한이 상대적으로 자립화되어 보이게 하여 왔으나, 이러한 '자립화'란 인식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노동운동의 건강성은

9)현행법 상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자'일 수 없고,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노동조건'이나 '임금'을 사안으로 '합법적' 저항을 조직할 수 없고, 더욱이 모집, 알선, 사후 관리와 같은 사안에 대해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노동 측의 저항이 없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김만이 관찰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인식적 한계를 들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회적이고, 유비에 불과하겠지만 미국노동운동사를 통해 성찰의 지점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3. 미국노동운동사로부터 생각해 볼 점

미국노동운동의 이미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헤이마켓으로 상징되는 전투성의 이미지이고, 또 하나는 AFL-CIO로 대별되는 개량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미지라면 단연 후자, 즉 개량적이고 조합적인 이미지이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계급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은 흑인으로 대별되는 여러 소수인종들과 백인의 이미지, 즉 어디보다 첨예한 계급사회이지만, 그 계급적 실체는 인종으로 분해되어 버린다¹⁰⁾. 그렇다면 미국의 노동운동이 어떤 하였기에, 이와 같은 현실에 이르렀는가?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 미국노동총연맹)은 1886년의 8시간노동제를 기치로 한 역사적 소요에서 태어났으며, 1890년대까지는 맹아적 연합체에 불과했다. AFL은 1893년~96년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우경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때 토박이주의와 민족적·종교적 갈등이 재연되었다. 이때도 이민이 문제가 되었는데, 즉, 이민이 자신들에게 심각한 경쟁의 위협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종차별에 의한 백인조합주의와 최하층 흑인 하위프롤레타리아트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의 단결이 와해되어갔다. 이때부터 AFL은 인종차별, 이민제한, 직능공 중심

10)이와 상당히 유사하게 남한 내에서는 지역적 분할선을 따른(전라도사람, 경상도사람 등) 분류법에 익숙하지, 계급적 분할선은 익숙치 않다. 즉, 정치의식이 지역적 분할을 따라가서는, 노동운동은 조합주의적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미국 역시 인종적 분할이 남한의 지역적 분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의 편협한 배타주의로 나아가게 된다¹¹⁾.

CIO(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산별노조협의회)는 1930년대에 투쟁 속에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CIO의 인적 기반은 부모의 언어나 농민적 미신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직업적으로 반세습적인 미숙련 육체노동의 질곡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이민 2세들이었다. 그러나, AFL의 형제살해광적인 CIO분쇄공조와 무분별한 민주당에 대한 지원¹²⁾으로 약화되어갔다. AFL과 CIO의 분열의 대가는 2차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살아남기 위해 반공주의, 파업파괴, 인종차별적 징집 인정 등으로 나아가면서 노조관료와 평조합원 사이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인종적 분할선을 더욱 굳히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노동운동사는 인종문제와 계급문제가 중첩되면서 인종적 분할선이 계급형성에 끊임없는 장애로서 등장했으며, 미국노동운동의 보수화로의 귀결의 견인차역할을 하였다. 즉, 계급형성은 인종적 분할선을 따라 저해되었다. 이는 AFL과 CIO가 계급의식 형성에 있어 인종적 분할선을 목인하고, 때로는 이용하면서 (민주당에 기대를 걸면서) '정치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이용당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인종적 분할선을 따라 계급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수화되어갔다. AFL과 CIO는 결국 최하층 계급(비숙련-여성, 소수인종)의 몰락을 방조, 조장했으며, 이는 제국주의전쟁 협조, 그리고 전후 좌파세력의 자체 정화로 이어졌다. 이는 '수'의 논리와 '힘'의 논리 속에서 스스로의 도덕성¹³⁾을 포기하면서 '정치화'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수'의 논리와 '힘'의 논리 속에서 조합주의화의 결과이다.

11)그러면서, 미국의 노동계급은 인종적 분할이 주거의 분리, 문화적 분리로 이어지면서 노동계급형성이 왜곡된다.

12)뉴딜 정책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파업파괴를 의미했고, CIO 내 공산당의 무력화를 의미했다.

13)여기서 도덕성이란 '계급적 형제애'를 가리킨다. 이는 미국노동운동사에서 계급의식형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가리킨다.

즉, 미국노동계급은 스스로 담당해야 할 도덕적 우위를 포기함으로써 정부와 자본과 함께가 되어갔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노동운동을 반성할 수 있는 틀을 얻을 수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민노총의 성장과는 별도로 그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¹⁴⁾.

4. 노동운동에 던져주는 함의- 정세적 요청으로서 일국적, 민족적 성격을 넘어서는 담론형성의 필요성

이미 세계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이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종거는 남한에서도 '외국인노동자'란 문제로 직접적으로 확인된다. 이미 '시민권'이란 요구는 그 외적 제약에 의해 그 내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¹⁵⁾. 노동할 권리는 노동할 자유를 필요로 했고, 이러한 자유는 하나의 권리로, 국가의 승인에 의한 '시민권'으로 등장하였다. 노동할 권리의 요구는 역사적으로 국민국가에 한정되는 '시민권'을 낳았다. 그러나, 지구화의 경향은 시민권이 '노동할 권리'를 제약하는 현실을 낳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권'이 서 있어야 할 역사적 지평이 '시민권'적이어야 하는가(국민국가에 한정되어야 하는가)란 정치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권'의 승인의 새로운 역사적 지평으로서 '인권'이란 무제약적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

14)인 이하 작업장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

15)사실, 남한에서는 '국민'이란 이름의 국가주의적 개념이 존재하지, 서구의 '개인'이란 식의 '시민'이란 개념은 생소하다. 여기서 '시민권'이란 이름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민족국가적 한계이며, 그것이 분할선으로서 가질 수 있는 차별의 가능성은 지칭하는 것이다.

체약적 성격으로 인해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일국적 한계를 되물어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체약적 '인권' 개념은 노동운동의 '담론'에 있어서도 역시 그 한계를 탐색하도록 한다. 앞서 살핀 '정부-자본-노동의 트라이앵글'은 일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트라이앵글이 인권적 지평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사안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의 지평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며, 인권적 지평 속에서의 '새로운 운동의 양식'이 모든 사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지구적 성격에 대한 노동의 지구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실천양식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양식은 비단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양식에 있어서도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5. 실천적 합의와 그 탐색

1) 국제연대

국제 연대의 문제 의식이 이미 100년이 지난고 이에 대한 실험적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했다. 그러나, 연대의 양식은 사태의 구체성에 도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는 외국인노동자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①지구적 문제들

지금의 지구화경향에서 현단계 자본주의 체제는 운동의 수준이 지구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이는 자본의 세계지향성과 맞짝 관계를 이룬다), 환경, 그리고 정보의 영역은 이것이 잘 드러난다. 이 세 영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단계에서 스스로 산출된 일국적 한계를 뛰어넘

는 공간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환경제국주의의 문제로 익히 알고 있는 바이고 또한 지구적인 NGOs의 활동에서 지구적 수준의 운동으로 등장해 있는 상태이다¹⁶⁾. 그리고, 정보의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국적 범위를 뛰어 넘고 있다. 즉, 정보는 이미 그것의 생산의 단계부터 지역적 한계를 그을 수 없는 생산물이다¹⁷⁾.

②참조할 수 있는 양식들(사례들)¹⁸⁾

여기서는 유일한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참조할만한 양식으로서 네트워크형의 노동운동의 사례와 특성을 검토하는 정도의 작업에 거칠 것이다¹⁹⁾.

역사적으로는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들어서 협의회와 네트워크, 소식지, 행동, 조직화된 캠페인 등의 폭발현상은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실천과 관련된 것이다. 초국적으로 조직화된 노동자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소위 '네트워크형'으로서 그 형태와 목적성이 과거와는 상이하다. 즉, 지구적인 사안들의

16)이는 환경 문제 자체가 일국적 수준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 사태의 원인과 별개의 피해의 영역이 무차별적이고 지구적이라는 데서 벌어지는 문제이다. 또한 이는 현단계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생산조건과 생산력의 모순)이 확장된 것이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수직위계적 생산방식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17)커뮤니케이션의 무한정한 확대를 가능케 하는 생산력의 발전과 정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적생산자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품의 정의에 이미 걸맞지 않는 생산물이다.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영역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사적 노동의 투입을 통한 가치창출이 이미 생산의 단계에서부터 들어맞지 않는 영역인 것이다. 각 단계마다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며 - GNU 등의 생산자들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유통경로 그리고 소비가 소멸을 의미하지 않고 즉각적인 생산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데서 시작되는 지적 소유권의 문제 - 문제의 수준은 이미 지역적 한계에 갇힐 수 없는 부분이다.

18)이 부분은 "현장에서 미래로"(1996년 9-10월호)에 실린 '초국적 노동자 네트워크-NAFTA의 뒤안길에서'를 상당부분 참조하였다.

19)이는 필요함의 절박함에 따르지 못하는 필자의 노력과 상상력의 부족의 탓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는 넘겨진 뿐이고, 필요한 상상력에 자극이라도 되면 즉할 따름이다.

복합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구적 대응의 양태들인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복합성과 각국별 상황의 특수성은 처음에는 서로간의 '정보의 교류'와 '경험의 교류'를 필요로 하였다. 물론, 이는 서로에게 하나의 새로운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초국적 사안에 대해 정보를 교류, 산출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지역적,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안에 따라 공동대응을 하는 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구체적인 사례로 유럽의 '초국적 정보교류소'(TIE : the Transnationals Information Exchange)와 과테말라 노조인 STEGAC의 예를 통해 그 함의를 짚어보도록하겠다.

TIE는 1979년에 유럽의 노동 분야 연구자들과 조직들이 창설한 것으로, 개발 도상국내 혁명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초국적 정보교류소의 설립의도는 초국적으로 단결하는 힘의 증대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국제적 포럼을 개최하는 활동 등을 통해 '노동운동 내에서의 국제전략의 발전'을 꾀했다. TIE의 조직화를 이끈 동력은 노조의 부적절함이 아니라 다른 사회 운의 견해와 정보를 통합함으로서 복합적인 문제에 대처할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TIE의 구성원들은 '남과 남'의 교류를 추구했는데, 여기에서 제3세계의 노동자들은 공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노출 프로그램'이 협의회를 통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TIE 협의회는 연구자들이 우세하였고, 구성원도 없이 '너무 좌익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금과 후속작업의 문제는 협의회의 평가를 통해 빈번히 제기되는 주제이다.

STEGAC는 과테말라 시티의 코카콜라 노동자들이 1970년대 후반, 군사독재의 폭압적 상황에서 그들이 승인 받고자 했던 노조이다. 이들은 '기업의 책임성을 위한 종교간 본부'에 의해 주도된 다수의 종교조직과 여러나라에서 온 노동자와 학생, IUF 그리고 식품 부문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구체 노동조합 사무국들로

구성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조직의 구성원들 스스로를 초국적인 위상으로 위치시켰고, 참여를 통해 힘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노조의 조직사업은 비 작업장적 이슈와 요구 사이에 가교를 놓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노조의 힘이 이 캠페인의 핵심적 요인이었다. 이것은 독립적 관계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신속한 정책결정과 시기적절한 정보의 교류, 그리고 참여를 통한 화부대중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허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일뿐만,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동원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커다란 책임성과 확고한 재정적 기반을 지닌 몇몇 중앙집중적인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두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지구화에 따른 사안의 복합성은 초국적 차원의 연대의 창출이 독립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의 교류와 체험의 교류를 통해 시작될 수 있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이고도 지역적인 정책 대안을 창출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는 확고한 재정과 책임성을 지닌 중앙집중적 조직의 도움을 통해서 지구적 사안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건강하게(동원력을 잃지 않고) 조직을 운영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다시 외국인노동자문제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주체들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반면²⁰⁾, 민주노총은 '정부-자본-노동'의 트라이앵글을 넘어서는 인식적 지평의 확장과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실천적 노

20)199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Migrant Workers Challenging Global Structures"란 이름의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는 회의의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지구화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풀려는 주체들 간의 교류였다. 이는 국제회의의 영향력을 넘어 지구화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초석이다.

력은 환경운동에서도 그린피스와의 긴밀한 교류에서도 확인되고, 정보운동에서도 맥브라이드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의 지속에서 확인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비단 환경운동만의 구호는 아닌 것이다.

2) 지구화란 지평에서 통일문제 바라보기

통일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냉전이데올로기의 부활로 다시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는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간략히 논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에서 이미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해외동포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어떻게 유입되어갔는가를 보면 그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설동훈 논문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가 한국계 중국인-러시아인을 대하는 태도는 "동포"에서 "외국인"으로 다시 "싸구려 노동력"으로 변화되었다. 정부는 1992년까지 그들이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국-체류에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동포들의 친척 방문이 급증하였으며, 그들의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로 잔류하는 경향이 증대하자, 정부는 어느 외국인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 1992년부터는 독립국가연합동포도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동포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 한국정부나 기업이 중국동포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우리 동포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인적 자본 때문이었다.

여기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하게 들어온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 밑바닥은 '남북경협', '남북 관광계발' 등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남한 자본의 필요에 따른 북한의 계발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은 남한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긴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양산업들(섬유, 의류, 신발 등 동남아에 그 경쟁력을 빼앗긴 노동집약적 산업들)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수혈받아 부활을 하겠다는 것과,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여 남한 자본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통일'문제가 거론되는 곳에서는 늘 남한자본의 필요가 융변되는데, 바로 그곳이 별 언급 없이 지나치는 북한 동포들의 위치인 것이다. 자본의 지구화가 '값싼 노동력'의 진원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역시 '인권'의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통일 국면에서 우리는 경쟁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평등의 담론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지구화란 지평이 던져주는 필요로서의 '인권'의 제기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시작할 때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전반적 상황

1. 아시아는 거대한 인력시장
2.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약사
4. 한국사회의 전반적 반응(입장)

아시아는 거대한 인력 시장

— 80년대 이후 중동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중심 이동 … “이주노동자 인권” 숙제로

네팔 경찰 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9만원이다. 네팔 출신 산업기술연수생이 한국 중소기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책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월급 액수는 2백·10달러, 즉 16만 8천원 정도이다. 경찰 공무원 월급의 거의 2배에 가깝다.

네팔은 절대 농지가 국토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이다. 네팔 출신 용병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일자리와 고임금은 네팔인의 노동력을 유인하는 첫째요인이다.

불법 체류 1년 8개월째이면서 네팔인 브로커 S씨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네팔인 M씨는 “네팔남자들은 13세만 되면 외국에 나가 일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70년대에 오일 달러를 쫓아 중동으로 몰렸던 네팔의 젊은이들은 이제 다시 ‘코리아 드림’을 꾸고 있다.

‘국제 품팔이’ ‘노동기계’ ‘노동난민’ ‘막일꾼’ 등으로 불리는 아시아의 노동력은 집단으로 국경을 넘나든다. 대부분이 건설현장을 찾거나 부품을 조립하고 가사를 대신하는 단순노무자이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것도 아시아 인력 시장의 특징이다.

싱가포르 건설 현장에는 태국 노동자들이 우글거리고, 태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대만에서 월 5백 달러를 벌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노동인구의 약 21%인 약 30만명이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인력 송출국이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기도 해서 현재 무려 백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홍콩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가정부만 해도 9만명에 달한다.

일본도 외국 인력의 주요 수입국이다. 94년 말 현재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는 약 70만명 규모이며, 이 중 불법 취업자는 무려 30만명으로 추산한다. 서비스, 토목, 건축, 주물 등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과 해외로 이전하기 불가능한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다.

한국, 일본에선 불법 체류자 최다국

일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92년 5월 현재 입국사증(비자) 기한이 만료되어 일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남자가 2만2천3백12명, 여자가 1만3천3백75명이나 된다. 일본에 불법 체류하

아시아는 거대한 인력 시장

고 있는 한국인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 사람보다 많아 불법체류자 최다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이주민센터(AMC)는 94년 말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수를 약 1천3백만 명으로 추산한다. 불법·합법 이주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 수치에는 정치 난민도 포함되어 있지만,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흘러 다니는 철새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한국·일본·대만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기타 지역에서는 아예 이주민(migrant)이라고 표현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피하고 경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이다. 중동의 오일달러가 서아시아 국가와 다른 중동 국가들의 노동력을 유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석유 생산국들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데, 수입 노동력 이외에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메울 길이 없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해외인력처(POEA)의 J.N. 사르미엔토씨는 이를 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제3세계로부터의 극적인 인력 수입’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83~86년 4년 사이에 중동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난 후 미숙련 단순 노무자에 대한 수요는 80년대 초의 38%에서 4%로 급격히 떨어졌다.

8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신흥공업국 가가 새로운 노동력 흡입 지역으로 떠올랐다. 대기 상태에 있던 이주노동자들로서는 70년대의 중동 산유국보다 훨씬 매력적인 곳이었다. 더구나 신흥공업국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했다. 임금은 높아졌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했다. 임금은 높아졌고 싱가포르 등은 적극적으로 노동력 수입 정책을 꺼냈다. 노동력을 유인하는 최적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경제구조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저개발국의 노동력은 아시아 선진국으로 대량 흡수되었다.

그러나 노동력 이주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 바로 인권 문제이다. 이주 노동자는 노동 시장에서 최악의 조건과 최저 임금으로 수입되

아시아는 거대한 인력 시장

는 '현대판 노예'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이기 이전에 상품으로 거래되면서, 노동력 수입 국가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언제든지 출국시켜버릴 수 있는 '노동 부품'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는 정치적 시한폭탄"

홍콩의 아시아이주민센터가 발행하는 한 자료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한폭탄'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강제 추방·체포·학대 등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단결을 피할 경우 폭발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 이주민국의 패트릭 타란씨는 '냉전 종식과 결프전 이후 새로 등장한 세계적 혼돈의 하나가 바로 이주민 문제이며, 지구촌 달레마의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노동력 이주는 아시아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노동력은 지금도 미국으로 흘러들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향한 태평양 연안국 노동자들의 이주 대열도 점차 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종족 분쟁도 경제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전쟁을 피해 지역간 이동을 하는 난민들은 결과적으로 노동력 이주형태를 띠는 것이다.

국제 노동인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도 약 10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은 백만명 선이다. 이주민들의 일본 입국이 현재처럼 어려울 경우 이주민들은 한국을 경유지로 겨냥할 것이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체는 이 '노동자 무역'이 좀더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인력 송출 기관이나 불법 브로커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시사저널 290호 95/5/18>

한국은 아시아의 노동력 수출국으로서 노동자 수는 1994년 10만명에서 1995년 15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이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에 2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다. 이들 노동자는 대부분 경제난민으로서 노동력 수입국으로 이주한 것이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1. 송출국가별 외국인산업연수생 입국현황 (1996.1.31 현재)

(단위 : 업체, 명)

국가별	인원수				업체수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3차	계
중국	8,216	1,935	1,665	11,816	1,701	271	356	2,266
필리핀	3,057	2,229	815	6,101	739	397	151	1,275
베트남	2,698	2,237	3,660	8,595	594	259	934	1,625
미얀마	1,034	-	-	1,034	223	-	-	223
방글라데시	1,660	650	2,691	5,001	442	139	673	1,160
파키스탄	848	244	55	1,147	200	48	10	247
스리랑카	1,005	-	567	1,572	200	-	249	206
인도네시아	1,096	528	4,969	6,593	185	88	1,288	1,257
네팔	816	222	-	1,038	223	42	-	257
이란	281	-	-	281	74	-	-	74
태국	-	124	275	399	-	29	57	80
우즈베키스탄	-	249	771	1,020	-	35	181	193
계	20,711	8,418	15,468	44,597	4,590	1,308	3,899	9,797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2.

참고 : 1차는 94년 5월, 2차는 94년 11월, 3차는 95년 8월에 입국한 인원을 말한다

2.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취업현황

이제 이렇게 도입된 외국인 연수생들이 어떤 업체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 보자. 1995년 6월 14일 현재, 중기협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연수생들은 1995년 5월에 신청한 5,210개 업체 중 94%인 4,944개사에 2만 2천 1명이 배정되었다.

(단위 : 명)

업 종	인 원 수
조립금속 업종	2510
자동차/트레일러	2390
고무/플라스틱 제품	2195
섬유	2143
영상/음향/통신장비	1775
제1차 금속산업	1428
비금속 광물제품	1361
화학물 및 화학제품	1010
기타 (의복 및 모피, 가죽, 가방, 신발업종 등)	7189
계	22,001 명

3.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지역별 배분상황

연수생들이 지역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약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 외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두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보건대 이러한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도 외국인을 단순히 관광객으로서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혹은 같이 살아야 하는 이웃으로 대해야 하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단위 : 명)

지 역	인 원 수
경기	7379
대구/경북	3321
경남	2411
인천	2985
부산	1383
대전/충남	1371
서울	1062
충북	828
광주/전남	540
전북	461
강원	235
제주	25
계	22,001 명

4. 외국인노동자의 유형별 분포

1996년 1월 현재 한국에는 공식통계상 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업종 및 중소제조업체 등에 약 13만 5천여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1996년 3월 현재, 국내에 실제로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약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과악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한국에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불법취업자'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3 수준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국내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분포 > (1996. 1. 31 현재, 법무부)

(단위 : 명, %)

합법취업자	8,539	6.3%
기술연수자	42,762	31.5%
불법취업자	84,385	62.2%
계	135,686	100.0%

참고로 여기서 외국인노동자를 몇 가지 범주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취업자, 기술연수자, 불법취업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합법취업자란, 국내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으로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고 이들은 주로 학원강사, 대학교수, 전문 엔지니어 등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전문인력들이며, 국내 노동자들에 비해 상당한 고임금과 좋은 근로조건 속에서 일한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들에 대해 전문기술직종에 한해서만 국내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순 기능인력의 국내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이를 전문인력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 이 범주의 노동자들은 최고 18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 전문직 합법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 (법무부 발표, 1996년 1월 31일)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사무직업	예술통역	특정활동	한계
인원수	639	4,405	315	614	200	657	1,709	8,539

둘째로는 기술연수자가 있는데 이들도 두 부류가 있다. 그 한 부류는 해외투자에 나선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을 국내 공장으로 보내어 현장직무교육(OJT)의 차원에서 언어와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하는 연수생이다. 이들은 대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1995년 2월 13일 현재 노동부장관의 기자회견 때 9,5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96년 1월말 현재 법무부에 의하면 14,24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대개 집단적으로 기숙사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물에서 거주하며,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는 편이다. 이들의 임금은 연수비라는 형태로 지급되며, 약 100달러 정도이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인데, 이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추천에 의하여 인력송출회사를 통해 들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연수생을 말한다. 1995년 12월,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범주의 산업기술연수생은 38,000여명에 이르렀다. 1996년 올해에는 또다시 2만명의 연수생이 들어 올 전망이다. 현재 중소, 영세 제조업체 등 전산업의 부족인력이 25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연수생은 쉽사리 10만 명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로는 이른바 '불법취업자'인데, 이들은 관광비자나 방문비자 등을 받아 입국하여 단순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산업기술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 일정기간 중소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만족이 매우 높아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자들을 말한다. 1995년 5월 10일 현재 이들 무단이탈자들은 제 1차 연수생 입국자 19,702명 중 6,111명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는 합법 유입 연수생의 약 1/3이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국적별 현황 > (1995년 7월 현재 신고된 숫자)

국가	중국(교포)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태국	기타	계
인원수	25,970(20,722)	8,476	5,533	2,217	2,222	1,653	15,201	61,472

이러한 불법취업자는 그동안 법무부의 강력한 단속과 관계부처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8월말 현재 신고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중국 교포를 포함한 중국인 28,900명, 방글라데시인 5,600명 등 모두 7만여 명에 이르러, 3년 전(92년 말 현재 3만 8백명)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말 현재는 81,866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6년 1월말 현재 이 숫자는 84,385명으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안한다면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외국인 노동자들도 구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인 이상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경우에 '노동력' 그 자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 습관, 언어, 경험, 감정, 느낌, 인간관계,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등을 갖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적응, 감정, 인간관계,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등을 갖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면서도 구체적인 측면에 가서는 긴장, 갈등,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일정한 생산목표와 적정한 품질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특유의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사와 부하, 또는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와의 관계 등에서 여러 측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실태와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속식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내어 준 간이숙소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따로 월셋방을 얻어 자취를 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만일 정부가 불법취업자를 강력히 단속하면 할수록 회사 내 간이숙소나 기숙사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따로 월세살이를 하는 외국인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집단 숙소에 3~5명씩 모여 살다 보니 개인적 사생활은 사실상 찾기가 어렵다. 물론 이것이 외국생활의 어려움과 고된 노동의 고통을 견뎌내거나 모르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부상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작업시간 이후에는 특별한 취미나 여가생활 없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워낙 일이 힘들거나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므로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② 불안한 법적 지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체류 취업으로 인하여 겪는 애로가 크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명예로 인하여 임금을 잘 받지 못하거나 위험하거나 장시간 작업을 강요당하기도 일쑤이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거나 부당한 조치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당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

그는 1992년 2월에 입국했는데, 한국에 취업한 이유는 일본 입국은 어렵지만 한국이 쉽기 때문이라 했다. 관광비자로 6개월씩 4번을 연장하여 1994년 6월에 만료되었다 한다. 그이후 불법체류자로 남아 현재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 그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여권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고 있다. 사장이 여권을 소지하면서 불법취업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옛날에는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참았다. 지금은 외국인노동자 집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여, 나름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해 혼자 고민하고 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불안한 지위는 그의 생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그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고향에 왔다 갔다면 좋겠다"고 한다. 이제는 불법취업자 신세가 되어 한국에서 고향으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어정쩡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고 한탄한다.

그는 "210\$의 산업연수수당으로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많다. 그러나 210\$이 문제가 아니다. 와서 조금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한다"고 하여, 돈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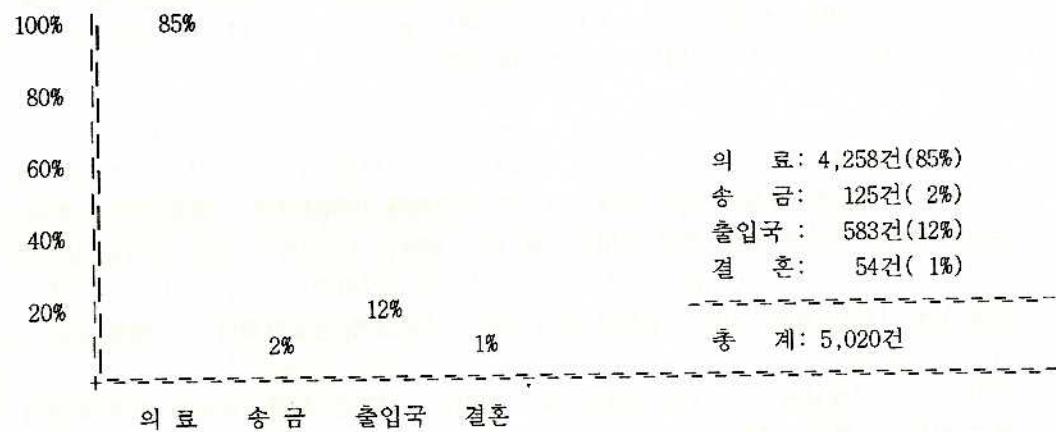
(네팔 출신 불법취업자와의 면담, 1995.12)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내가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될 뿐이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참을수록 이것이 마음의 한으로 되어 본국에 돌아가서는 한국인 그 자체에 대한 중요심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관광객이나 사업자 여행중인 한국인이 동남아 각국에서 당하는 수모에서 증명이 된다. 그 한 예로 한국 사업가 두 명이 필리핀의 마닐라 공항에서 같이 탔던 승객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이 공항에서 경찰을 불러 이유없이 폭행당했다고 도움을 호소하자 경찰이 조사를 한 뒤 이들이 한국인임을 알고는 오히려 경찰도 이들을 폭행하였고, 마침내 이들 한국인 사업가들은 볼 일도 보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국내 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같은 인간으로 정당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하나의 '부메랑 효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족간의 감정이 서로 매우 증오하는 형태로 발전한다면 결코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을 리 없다.

③ 의료 등 일상생활문제

아래 <도표>는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하는 한 민간단체에서 199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10개월동안 일상생활문제와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이 의료와 출입국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일상생활문제의 유형별 통계 >



* 자료: S 외국인노동자의 집(1995).

특히 의료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연수생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은 빈약한 수준이고, 불법취업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사리 감염되는 병이 결핵, 폐렴 등인데, 이러한 병은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무서운 병 중 하나이다. 험한 작업환경과 부족한 영양섭취가 이들을 '후진국'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고향에 갈 수도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장기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들간에, 또는 국내인과 결혼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국적자의 출현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은 '노동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게 의료, 결혼, 교육 등의 문제는 생존 및 생활과 관련하여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약 250만에 이르는 한국 노동자들이 해외취업을 하여 낯선 외국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삶의 역정을 헤아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과 공존하는 '열려진 사회'(이것이 진정한 '세계화'일 것이다)로의 추세는 필연적이므로 이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보장 및 사회적 권리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본다.

(자료 전체, 강수돌,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리 실태 및 정책 대안" 발췌)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약사(略史)

원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1990년대 이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고용된 현지 근로자들의 기능향상을 위해 이들을 국내 기업에 일시적으로 취업케 한 제도였다. 즉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단순산업연수생들을 상공부(통상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시켰던 것이다.

1991년 11월 법무부의 훈령에 의해 산업기술 연수생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제시된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외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공장 근로자를 한국보기업에서 연수시켜 현지공장 투입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연수토록 하여 인력부족을 간접 지원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 도모

이와 같이 연수생 제도는 해외투자기업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의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이전이나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1992년 초부터 1993년 4월까지 주로 염색, 도금, 주단조 등 10개 업종에 국한하여 8천여 명 정도가 연수생의 신분으로 들어 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노정되고,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인력난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자,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199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 1만명 예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원래 최대한 1년간 체류가능하도록 허가된 상태였다. 1993년 11월에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전면화하기에 이르렀다. 연수생 도입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로 하여금 연수생 모집, 알선, 연수,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12월에는 연수생의 최대 도입 인원을 2만명으로 늘렸고 동시에 최대 체류기간도 2년으로 연장시켰다. 이어 1994년 7월에는 추가로 1만 명의 연수생 도입을 허가함으로써 모두 3만 명의 연수생을 도입하기로 되었다. 이들은 섬유(6천명), 신발(4천명) 업계에 배정된 것이었다. 나아가 신발업체에서는 대기업도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게 하여, 이른바 '3D업종'에서의 인력난이 심각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게하여 1995년 8월 현재 1차도입 예정인원 3만명 중 2만8천명이 입국한 상태이다.

1995년 8월 10일 통산부는 외국인 연수생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업, 건설업, 서비스업종의 영세업체를 연수업체 대상에 포함시키고, 연수업체 규모도 상시고용 10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 발표하였다. 특히 서비스 업체의 경우 기업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연수생 채용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하였다. 나아가 중기협 이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 3의 기관에 추가연수생 도입업무를 맡길 것도 검토

중이라 하였다. 한편 중기협에서는 1995년 9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제 2차 2만명의 연수생을 추가 도입 예정으로 있으며 이미 1995년 5월 중기협을 통한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숫자를 5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어 1996년 2월에는 또다시 2만명의 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도입국도 현재의 12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연수업체도 사업개시 3년 이상이 아닌 1년 이상이면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예전의 근로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기업이면 연수생 도입이 가능하게 범위를 확대하였다. 연수생은 2년 체류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업종에 한해 연수생 수의 10% 정도는 체류를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 내지 영세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연수생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규모 변천

시기	내용
1991년 말	상공(통신)부 장관 추천업체에서 단순 산업연수 허용
1992년 하반기	1만명 도입 발표, 최대 체류 제한 1년으로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전면화. 연수생의 도입창구를 중기협으로 일원화
1993년 12월	1만명 추가 도입 발표, 최대 체류 2년으로
1994년 9월	또 1만명 추가 도입 발표, 신발업체는 대기업도 도입 가능
1995년 5월	1994년 입국 연수생 체류기간 1년 재연장 발표
1995년 8월	제 1차 도입 예정 3만명 중 2만 8천명 유입
1995년 9월 - 1996년 6월까지	제 2차 연수생 2만명 도입 예정
1996년 2월	1996년에 또 연수생 2만명 추가 도입 확정, 어업분야에 8천명 도입 예정.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시기	내용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10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발표 (법무부 훈령 제255호) : 동년 11월 1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고용인력 기능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기술 연수
1992 ~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연수생(매년 8-9천여명 입국) 외에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 : 외국인 범죄의 증가, 불법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화 : 단속에 의한 강제 출국, 불법고용 사용자 형사처벌 등 증가 - 중소 영세기업주들의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 노동력 채용 합법화 건의 - 1992년 6-7월, 외국인 노동자 채용기업에 대한 일제신고기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 면제 : 신고사업주 책임하에 당해 12월 말까지 출국기한 연장, 한시적으로 국내체류 허용 - 출국기한 연장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6월(2차연장), 93.12월(3차연장), 94년 상반기(4차 연장) : 국내 영세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부족상황을 고려한 '시한부 합법화'
1993. 11 ~ 1994	<p><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전면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생 도입기준 완화 및 2만명의 산업기술연수생 추가 도입 :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연수생 모집, 알선, 연수, 사후관리 담당 : 대상 -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 제조업체 - 1993년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연수기간 1년에 1년 연장 가능 (94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4년 9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 1만명 추가 도입 (섬유 7,500명, 신발 2,500명): 총 3만명.
1995. 2 ~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 부여 :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 금지, 폭행금지, 금품청산, 근로시간 준수 등 법적 보호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과 보건 조치 및 건강진단 등 실시 : 최저임금법 적용 - 국내 최저임금인 월 264,000원 이상의 임금 지급 등 - 노동부 '고용허가제' 추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산업부, 법무부, 중소기업 협동중앙회의 반대 - 1995년 5월, 중소기업 협동중앙회를 통한 산업기술연수생 도입 숫자를 5만명 수준으로 확대, 결정(2만명 추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중소기업 협동중앙회, 6만명의 산업기술연수생 추가 도입 추진 : 축산업계 및 원양 어업계의 산업기술연수생 도입 추진 등 : 1994년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의 체류기간 1년 재연장지침 발표 - 1996년 2월 또다시 2만명 추가 도입 결정(총 7만 명 도입 예정).

연수생 및 연수업체의 선발 절차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중기협(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 및 연수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연수업체 추천신청 접수
- ② 송출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연수업체 명단 통보
- ③ 연수업체선정, 연수업체 연수허용인원 결정, 대상국가별 인원조정, 연수업체와 계약체결
- ④ 연수자 선발, 신상명세서 접수
- ⑤ 연수업체 추천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 및 인정서 발급신청, 수령, 송부
- ⑥ 연수자 입국, 연수자 및 연수업체 교육, 상해보험 가입, 연수업체에 연수자 인도
- ⑦ 연수실시, 연수자 건강진단 실시

한편 연수업체 선정의 기준(1995년까지)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1996년 들어, 연수생제도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이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 ① 대상업종 -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5% 이상인 업종
(음식료품, 담배, 출판, 기록매체복제업 제외)
- ② 연수업체 요건 - 사업개시 3년 이상(1996년부터 사업개시 1년 이상으로 개정)
상시종업원 10~300인 업체(1996년부터 5인이상 중소업체로 개정)
공장등록 필수 업체
숙박시설 갖춘 업체 등

그리고 도입된 연수생의 연수기간은 1995년까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중소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1996년부터 기본 2년으로 하고, 10% 인원에 한해 특정직종에서만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료 전체, 강수돌,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리 실태 및 정책 대안" 발췌)

한국사회의 전반적 반응 (입장)

1. 국가의 입장

국가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하여 세 가지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구는 ① 국가경쟁력의 강화, ② 내국인노동자의 취업기회 보호, ③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적 대응 방식은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종속된다. 그러나 한편 현재까지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인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 따라 '불법' 상태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축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현재까지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자.

1) 정책의 기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입국사증'을 통해 관리, 통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대체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단순기능적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력난 해소'라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해 단순기능적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존재를 한편으로 묵인하고 있다.

2) 자본의 압박과 노동의 반대, 미등록노동자의 계속적 유입

89년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 만연한 생산적 인력난과 국제분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된다. 어느 사회집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운데, 생산적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 자본가의 정부에 대한 압력이 행해진다. 이에 한국노총과 전노협은 내국인노동 취업기회 및 노동조건의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사안이 확대되자 정부는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3) 해외현지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중소기업의 요구와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 수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사회문제를 동시에 방지하려는 편법으로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을 도입한다. 92년 8월까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해외투자, 설비수출 관련 해외현지법인을 통해서만 유입된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인력의 도입은 국내 산업체에의 취업으로도 활용되었다.

4) 미등록노동자 규제와 상공부장관 추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미등록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로 '특별단속'과 '자진신고'가 실시되고, 미등록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압박을 가속화한다. 한편 자진신고자의 일부를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한다. 92년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연수생의 연수기간 연장과 연수대상업체의 확대를 요구하고, 정부정책은 표류를 시작한다. 불법체류자의 출국이 연장된다. 이후 94년 5

월까지 총 4번의 출국연장이 시행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93년 중소기업 인력난의 계속과 미등록노동자 대책의 표류에 따라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중심이 '상공부장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전된다. 모집, 일선, 연수, 사후관리 등 모든 부분이, 외교적 쟁점으로의 비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중소자본가의 이익의 극대화로 귀결되었다. 더불어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더욱 증가되었고, 그들은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 방치된다.

6) 저항과 정부의 제도 개선

94년 1월 산재 관련 외국인노동자 경실련 강당 농성, 95년 1월 명동성당 농성,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등 저항이 촉발되었고, 이에 따라 95년 2월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연수생은 산재보상보험, 의료보험의 적용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7)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드러나면서 노동부, 재경원, 법무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우선 '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적 노동력 수입을 합법화하고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사용자의 신청을 노동부장관이 허가하는 방식인데,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노동허가제'보다는 대만의 '고용허가제'에 가깝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측면보다는 관리, 통제를 합법화, 합리화하는 측면이 크다. 이에 반해 '연수취업제'는 일단 연수생으로 수입 후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친 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중간 형태이다. 명동성당 농성 후 연수취업제 도입 방침은 철회되었고, 최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입법추진을 발표했으나, 통상산업부, 법무부, 중기협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2. 자본의 입장

한국의 경우 자본은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은 무관심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이는 문제 자체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자신의 실물적 기반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기업이 어떠한 적극적 대응도 하지 않는 무책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활용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소기업의 입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표하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은, 직접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본가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유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대처방안 중 임금수준/근로환경의 개선, 임업시간의 연장, 자동화 등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선호되고 있다. 직종의 특성상(3D업종) 내국인노동자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유 중 첫 번째는 임금이 싸다는 것이다. 그 외에 통제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2) 고용에 대한 자체 평가

부대비용등 전체적인 노무관리비가 싸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잘 활용하면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고충으로 사업체 이탈, 생활관습의 차이, 의사소통 곤란 등이 지적되고 있다.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미지

한 마디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값싸고 말 잘 듣는 인력'으로 파악한다. 주된 관심은 고용에 따른 비용 감소와 통제 강화를 통해 값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금지, 연락통제, 임금체불, 여권압류, 감금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3. 노동의 입장

우선은 내국인노동자 개개인들의 의식을, 또한 상황의 진행에 따른 민주노총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자.

1) 내국인노동자의 상황인식

많은 경우 오해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국인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내국인노동자의 고용, 실업 문제이다. 다음으로 외국인범죄, 산업체해, 임금체불, 장기체류 등이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해 산업기술연수생의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한국계보다는 한국계외국인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한편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의 전통적 위계의식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제도화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 '보수적이고, 노예처럼 굴종적이며, 느리고, 소극적이며, 의심스럽고, 멀게 느껴지고, 지저분하고, 불쌍하다'는 것이다.

3) 직접 접촉의 결과

직접 접촉의 결과 긍정/부정의 양면성을 갖지만 그 기준은 '한국인의 문화적 관념과 관행'에 따른다. 직접 접촉은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

4) 노동조합의 대응

노조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가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중소기업의 명분을 수긍하여 '조합원의 취업과 노동조건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 또는 묵인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다.(노조로의 조직화의 미비에는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고려한 외국인노동자 자신이 회피한다는 점, 산업기술연수생은 법적으로 노조 가입의 자격이 없다는 점 등 추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5) 민주노총의 입장과 태도

전노협 당시 내국인노동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입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가시화되고 '외노협'이 결성되는 등 주체적인 대응이 두드러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됨을 전제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도입하되, 일단 국내에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실천적 합의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전체. 설동훈,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발췌 정리)

자료

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운동 약사
 2. 외국인 노동자의 편지 1.
 3. 외국인 노동자의 편지 2.
 4. 벌금 200만원과 인간의 생명
 5. 이 땅에서 이렇게 죽어갔다
 6.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7. 고용허가제의 내용 및 예상효과
 8.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자료 목록
 9.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
 10.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 주소록

구별에서 공존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타인인가? 인간의 역사는 지배와 억압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타인을 만들어 왔다. 그 타인들은 항상 역사와 삶의 조건에서 주변을 강요당해왔다.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들은 타자였고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타인으로 만들어왔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한 이러한 구분과 차이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노동을 될수록 값싸게 구입해야 할 상품으로 전락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살 곳은 향상 주변이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부여받은 타자의 정체성은 그들에게 주변 중에 주변을 강요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배제와 차별과 권리의 제한이 뒤따라 다녔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해진 모든 불평등과 억압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들을 타자로 규정한 구분과 차이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당연히 보장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를 위해 투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정당화시키는 제도와 사회적 인식틀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제반 활동들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을 넘어,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확장을 위한 보다 큰 운동의 흐름에 합류하고자 한다.

◆ 이글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 최근 노동자들이 본래 노동자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해방 이후의 경제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민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유출해왔던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올림픽으로 한껏 높아진 한국의 경제 위상은 한국을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부각시켜 준 것이다. 또한 91년 한중수교는 중국의 조선족들의 모국방문을 통한 노동력 유입을 유도했다. 이러한 초기 유입과정을 거쳐 이들이 본격적으로 제조업체에 종사하게 된 시기는 92년경부터이다. 이들 고국과 임금 격차가 현저하다는 점과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맞물려 주로 3D 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에 종사하게 된다. 92년 6~7월 2개월간에 걸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서 32개 국가 6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초로 공식화되었다. 이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공연했으나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과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암묵적으로 조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서 95년 7월을 기점으로 법무부 공식 발표만으로도 1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 관심과 연대 — 초기 외국인 노동자 운동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인권문제와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제일 먼저 관심을 표명한 곳은 종교단체들이었다. 대한 성공회 이정호 신부 등이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활동이 최초의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양심있는 시민들의 보임'이 결성되어 초기 필리핀 노동자들의 상담과 설문조사 등을 수행했다.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구로 회년 선교회' '구로 희망의 집'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임기위침해사례 상담과 선교활동, 의료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각 상담소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임금체불과 산재 등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의 촉구 등 종교적 자선과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차원이었다. 이 시기에 '구리노동상담소(박무영)'의 활동은 주목할 만한 것인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노동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해당 부처에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수많은 질의서를 통한 공방과 외국인노동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시도하여 이후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틀거리와 자료를 제공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출입국 관리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1993년 중국 교포 임호씨가 출국시 과다한 벌금징수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 사건은 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1월 9일 피난처를 주축으로 해서 회년선교회, 오천근씨, 성남외국인선교회 등이 목동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항의하는 최초의 시위를 벌인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처음이었던 목동 출입국 관리소 앞의 항의시위는 당일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임금체불자와 산재자 등,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출입국 관리소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계당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경실련 노선

93년을 전후로 가장 정력적인 활동을 펼친 상담소는 아마도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일 것이다. 한달 평균 1000여건의 방문과 상담 사례들을 접한 피난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주와의 면담, 노동부에 중재 요청, 경찰과 법원에 호소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더 과격한(?) 해결방식을 모색했다.

93년 11월경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잘려지는 등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13명이 보상은커녕 숙식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경험으로 배운 피난처 실무자들은 한달 동안 준비를 한 후 산재자들과 함께 94년 1월 9일부터 결식령 회의식에서 각을 해 2월 7일까지 항의 농성을 벌였다.

경실련 농성은 초기에는 각 방송사와 일간지 등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세계화의 구호가 범람하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언론 보도의 좋은 소재가 되었던 탓이었다. 이러한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에 고무된 몇몇 참여단체들은 농성 해제를 종용했으며 정부는 농성을 중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농성 당사자들과 피난처 실무자들은 농성 당사자들에게 산재 보상 보험법을 즉시 적용할 것과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은 거의 한 달간 계속되었다. 경실련 농성이 외신(로이터)을 통해 국외에 방영되기 시작하자 결국 정부에서는 3년 이전(92년 2월 8일 이후) 산재자까지 산재 보상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타협안이 받아들여져서 한 달 간에 걸친 농성은 막을 내렸다.

경실련 농성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제기한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이었다. 이후에 시민 단체들과 언론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으며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산재 보상 보험법의 적용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의 선례를 낸다는 점 또한 농성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면에 끊임없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논리가 깊

려 있다는 점은 간과된 채 노동자라는 명사 앞에 붙어 있는 '외국인'이라는 접두어가 주는 선정성 때문에 언론과 사회의 초점이 되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운동이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추동되었다는 점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 경실련 농성 이후

경실련 농성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국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인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는 산업 기술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기에 이른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정부가 계약을 체결한 여러 국가에서 산업기술 연수생들을 모집해서 국내에서 기술을 연수하게끔 하는 제도였다. 이들은 주로 현장에서 노동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게되자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들여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노동인력을 들여올 경우 노동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의 저임금 노동력을 수입하기에 이른다. 정부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현지에서 모집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소기업협동 중앙회에 맡긴 것을 보면 이 제도가 국가간 계약에 의해서 기술을 연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인력난을 해결할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실제 이들의 임금은 170~220달러(약 15~20만원)에 불과하다-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기협에 의해서 모집되고 현장으로 배치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연수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10시간의 강제노동과 외출과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당한 채 공장 안에서 감금을 강요당했고 공장 안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 공장간부들에 의한 폭행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 산업기술연수제도에 희생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외부에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민주노총과 피난처는 94년 10월에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 실태 보고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보고대회에서는 산업기술연수생이 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하며, 불과 20만원도 안되는 임금조차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과 인력송출과정에서 현지의 계약조건과 한국에 와서 실제 상황과 다른 점을 폭로했다. 또한 정부에 산업기술연수생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과 공장내의 폭행, 감금, 강제노동의 금지, 사업주와 인력송출업자에 대한 법률적 처벌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 달 후 11월 25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피난처,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 12개의 단체가 연대해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인권실태개선 캠페인과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항의행진을 통해서 보고대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시 요구했으나 정부와 중기협의 반응은 한 달 전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1994년 12월 5일 네 팔산업기술연수생 13명이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로 피신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제당하고 외부와의 출입을 통제당했으며, 또한 폭행과 200달러가 못되는 임금을 몇 개월간 채불된 상태였다. 이들 13명과 피난처는 한 달 동안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93년도 경실련 농성에서처럼 산업기술 연수생의 문제를 폭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면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12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농성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 치열한 싸움-명동성당 농성

95년 1월 9일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운동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날이 될 것이다. 이날 네팔인 13명과 피난처 실무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명동성당 입구로 진입해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장기간의 농성이 될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초기예상과는 달리 명동농성은 첫날부터 언론의 관심을 크게 샀다. 농성 첫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과 쇠파슬을 온몸에 감아 강제, 감금 노동을 항의한 퍼포먼스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호의적인 언론의 반응은 농성이 시작한지 5일 정도 지나자 점차 시들해졌다. 몇몇 일간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성을 배워 간다는 논조의 기사를 신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사회의 여론에 호소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농성은 그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농성 주체 측에서는 장기간의 농성을 대비한 준비만 논의가 되었을 뿐 언론의 예기치 못한 호응, 정부와 중기협의 협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책은 거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농성과정의 어려움은 언론의 보도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농성당사자와 한국인 실무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심각한 것이었다. 네팔연수생들이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서툴렀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황에 대처해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농성장 주변에 투입된 공권력은 네팔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언어차이로 인해 전달되지 못해 농성은 더 어려워졌다. 그런 상황 중에 일본주재 네팔대사가 명동성당에 직접 와서 이들을 설득했다. 네팔대사는 농성이 계속될 경우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적당한 선에서 농성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네팔대사는 중기협에서 그 비용을 들여 데리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네팔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농성이 시작된 지 일주일만에 농성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하나도 관철되지 못한 채 협박에 가까운 자국외교관의 설득과 한국 정부와 중기협의 위압적인 분위기 조성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농성해산과 함께 정부는 공장에서 강제로 압류한 여권을 본인에게 직접 돌려줄 것, 체불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 이 일로 인해 측방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 강제감금 노동금지, 직장재배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당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이행된 것이 없었다. 농성에 참여한 13명의 네팔인들 중 1명은 여권을 다시 압류하고 강제 노동시키는 것에 반발해서 공장을 이탈했다가 강제로 출국당했으며, 10명은 재배치된 사업장을 빠져나와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명동성당 농성은 확실히 실패였다.

하지만 명동성당 농성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비록 농성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운동이었지만 한국사회에 미친 그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명동성당 농성은 우선 언론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며 지내왔나를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이 점은 일반 시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제일주의의 기본주의의 논리로 희생당한 사람들 중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와 움직임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끌어 냈으며 그 결과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명동성당 농성을 전후해서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질적인 차이가 구분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상담소 개설을 비롯해서 외국인 노동자 운동이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구분이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과 제 민주단체들의 연대상황도 그전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단순히 인권의 사각지대쯤으로만 여겨졌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이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 .

방글라데시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정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님께 편지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Atiqur Rahman입니다.

1995년 3월 22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저를 체포하여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한국에 2년 살다가 오랜만에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랑 행복하게 지냈지만, 3·4개월 이후 갑자기 돈을 벌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에 부풀어, 돈을 많이 주고 첫 번째로 92년도 3월 5일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체포당 하여 할 수 없이 92년 3월 29일에 돌아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시장은 끝없는 정치분쟁으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방글라데시 경제가 날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차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① 첫 번째로 1992년 3월 5일 한국에 갔었습니다.

②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갔었습니다.

③ 저는 첫 번째로 한국에 갔을 때 일터도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사출기·가구공장·도금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임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바꿔갔습니다.

④ 한국생활은 많이 불편했습니다.

⑤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많이 달라서 한국사회에 공장상황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음식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항상 "30일" 내내 일을 하였습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과 사장님의 욕설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저는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93년도에 두 번째로 한국에 와서는 6개월치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⑥ 1992년 3월 29일 강제 출국당했다가 93년에 다시 한국에 왔고 95년 3월에 또 강제출국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⑦ 단속 기간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왔다가 우리를 체포하여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⑧ 세계 어디든지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미국·캐나

다·이탈리아 등에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이렇게 강제로 출국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⑨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번째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⑩ 다시 브로커를 통해 돈 7백만원을 주고 왔습니다.

⑪ 지금은 부산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⑫ 불편한 것도 많고, 4개월치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⑬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는 방글라데시인 브로커는 M.A. Rasheed Labud Belal, Hossain이고 한국인 브로커는 MrKim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한국의 70년대 자화상입니다. 한국인도 예전에 돈벌기 위해 해외로 나갔습니다. 옛날의 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를 잘 못해서 오해가 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방글라데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의 글로 원문을 실었다.
번호매김 역시 원문 그대로이다.)

96년 6 월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네팔노동자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으로 보낸 편지

- 김해성 목사 구속에 대한 느낌 -

지난 6월 3일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아저씨, 아줌마가 잡혀갈 때 우리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목사님과 누나가 우리대신 아저씨, 아줌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두분마저 잡혀갔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두분의 어렵고 힘드신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들도 인사도 못한채 잡혀갔고, 어떤 친구는 얼어맞으면서 잡혀갔습니다. 우리도 언제 잡혀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명동성당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도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부모형제를 고향에 두고 이곳 먼나라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우리는 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이 먼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자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 사장님들도 우리를 쓰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노동만이 필요했지 우리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장님들은 공장이 어렵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한국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임금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야 사장님의 왜 그런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월급을 주지 않아도 사장님은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다쳐도 사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상당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우리의 역울한 사연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장으로 찾아가서 나쁜 사장님들과 싸우셔서 우리의 월급도 찾아주시고 치료비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 아줌마가 잡혀가실 때, 목사님은 출입국 사람들에게 아줌마가 몸이 안 좋으니 진찰이라도 받고 보내겠다고 사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저씨 아줌마는 차에 실려 가시고 사정하시던 목사님도 결국 잡혀가셨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우리는 도와주시는 분들마저 잡혀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세요

벌금 200만원과 인간의 생명

- 외국인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제도 -

オス만씨의 죽음

1996년 1월 17일 아침에 방글라데시 사람 오스만(OSMAN)씨가 부평성심병원 인근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오스만씨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 51소재 ○○금속이란 공장 내에서 일해오던 중 사촌동생인 줄하쉬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줄하쉬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고 변사는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성심의원에서 치료 중이었다. 쇄골 골절상으로 진단이 나온 오스만은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야산 소나무에 목을 매에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만의 자살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경찰수사로는 자살이유를 전혀 할 수 없기에 외노협 조사반은 방글라데시 대사관과 협조하여 오스만의 행적을 조사하였다.

절망적인 고향가기

조사 결과 오스만은 3개월의 체불임금과 본국에 있는 아들의 사고로 피로워하며 조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월급이 체불된 상태이고 출국하기 위해서는 체불된 임금의 배 가까이 넘는 200만원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오스만은 강제출국 당하기 위해 동료이자 사촌동생인 줄하쉬에게 칼을 들고 서비스를 거는 일종의 쇼를 벌였다. 결국 오스만은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어깨쇄골뼈가 3도막나는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오스만씨는 인근야산에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를 자살로 발표했으나 여론으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제출국까지 불사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한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의 어깨뼈 부상도 경찰은 오스만씨가 경찰서에서 도망가다가 3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서 다친 것이라고 하지만 어깨의 쇄골뼈 골절은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단순한 자살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음에도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경찰의 태도 또한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는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 제도

오스만씨의 사인이 무엇이건 간에 그의 죽음 이면에는 출입국 관리소의 비인간적인 벌금 징수제도가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3D업종의 인력난을 매우면서 저임금으로 땀을 흘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정부가 해준 것은 무엇이었나? 저임금에 손가락이 잘리고 발이 부러져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그들의 땀의 결실을 가로채는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 지수가 그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출입국 관리소의 비인간적인 벌금징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은 벌금을 내지 않고 강제출국 당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여 경찰에 강제연행을 당하는 기이한 현상도 빚어내고 있다. 저임금과 각종 산재에 방치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비인간적인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정책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할 것과 밝혀져야 할 것

오스만씨의 죽음과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정책에 대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법무부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비인간적이고 현실성 없는 벌금제도를 즉각 철폐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한 벌금의 액수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오스만은 경찰초소에 자진신고를 하였고, 파출소를 거쳐 부평경찰서 외사계에 갈 때까지는 다치지 않았음이 확실하고 부상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분명하다. 왜 쇄플풀절이 생겼는지를 밝혀야 한다.
- 또한 부검도 없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기까지 보호를 소홀히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밝혀야 한다.
- 부검도 없이 사인을 일방적으로 자살로 단정하고 조기에 사건을 수습하려고만 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이번 오스만의 사망사건의 전말에 대해 경찰청장은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소식지 『노동과 평등』 창간호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죽어 갔다

이름	국적	나이	사망 장소	사망일	사망 원인	보상 내역
아길리필리시스노	필리핀	37	남양주군	93.11.29	공작기숙사 화재	시신화장
개리	"	46	서울 화양동	93.11.22	"	1천만원
헬렌(여)	"	41	"	"	"	5백만원
찰리	"	30		93.7.12	기과지 쳐식	보상없음
테오도리코	"	23	경기 화성구	93.5.18	기숙사 연탄가스	"
마리나쿠르즈(여)	"	34	"	"	"	"
마리아 로비소	"	34	경기 여수	93.4.19	작업중 식작마비	
주 카스트리오	"	34		92.12	취침중 식작마비	
노엘 아벨리아	"	27		92.10	작업중 모터폭발	
로 단테	"	25		92.8	취침중 식작마비	
페데리코	"	22	경기 안산	94.12.3	산재사고 사망	산재보상금, 미사 보상
죠셉	"	32	"	96.1.31	철야중 호흡곤란	회사 보상, 독지가 섞금
로벨트 아리스	"			95.5.1	살인	
문알도	"			96.1.10	공작화재 질식	
로드리고	"				폐렴	
아델아이다	"			94.10.21	석수대교 붕괴	
임호	중국	42	영등포구청암	93.11.10	벌금징수비 과자살	위로금 50만원(출입국)
이워호	"	37	경기 용인	93.11.1	산재 사망	
허순필	"	41	경기 분당	93.5.10	건설현장 추락사	시신처리비 포함 4천만원
이영길	"	43	충남 천안	92.6	공작 내 추락사	1천9백만원(산재처리)
김정수	"	41	경일건설	92	건설현장 추락사	4천5백만원(산재처리)
이옥수(여)	"				나하물에 머리충격	
유연희	"			96.8.13	열사병	
최귀순(여)	"			96.8.14	열사병	
조영철	"			96.3.5	고혈압	
바드리	네팔	43	경기 포천	93.10.29	취침중 식작마비	1백70만원
수니레 마하르자	"	24	경기 안양	93.6.28	"	5백만원
버비 젠 구론	"	29	경북 경산	93.7.4	저기감저사	5천만원
차드라 식 구론	"	인천		93.3.27	취침중 식작마비	위로금 3백만원
챠트라바라둘구론	"	36	경기 의정부	92.11.1	교통사고 범사체	보상없음
푸란 체트리	"	20	경기 아산시	92	취침중 식작마비	
아덤 쿠아라이	"	34		92.9	"	
락스이카타수벨디	"	인천 부평		92.4	저철철로 위 범사	보상없음
마다바 쿠오르	"	23		92	해박불명	유족 시신 수소문 죽
라마	"	40		95.7.29	유동중 식작마비	범사로 처리, 과로 의식
나라야	"				의사	
하리	"				뇌수두증	
만니크	"				폐렴	
아일 다크	"			95.10.4	살인	
나리 타맛	"			95.11.1	자살	
바하둘 뱌자	"			96.3.13	식작마비	
비우스 체트리	"			96.4.7	조 사중	

이름	국적	나이	사망 장소	사망일	사망 원인	보상 내역
마니크	박글라	30	경기 용인	93.8.28	가연치류후 뇌막염	보상없음
나즈울	"		경기 김포	93.3.15	제게차에 칼려죽사	회사 4백만원 제시
비부르 노만	"	43	서울 무래동	93.7.24	철야증 과로사	보상없음
하랄 우드	"	27	충북 읍성	93.7.8	변사체(교통사고)	보상없음
라만 사하	"	34	부산 사하고	93.5.17	교통사고	
하나 카	"	29	서울 문정동	92.4.1	변사체	보상없음
나질 우드	"	34	경기 안양	93.1.13	변사체	
나질알란 카	"		경기 김포	93.9.14	변사체	
수웨드 앤들카데르	"			93		
로엔디 후세인	"			93		
카란 호시아	"			93		
나즈룰	"			93		
안돌 라흐	"			93		
아스라프	"			93		
카센	"			93		
마하불	"			93		
라흐만	"			93		
파루크	"				화재사망	
모타레브	"				"	
알	"				"	
사함	"				폐렴	
포라시	"	20대	경기 김포	96.3	뇌진탕 사고사	
오스만	"				타살	
라흐만	"	34	인천 부평	96.2.16	경찰과려 범사	경찰 2백만 모금 2백만
자킹 이슬람	"				심장마비	
누랄 이슬람	"	43			워예노자 화재	
까말	"	24			기도폐쇄	
타파	"	29			음주후 취취 사망	롯데복지재단 위로금
브디하메드	"				교통사고	
오말알리	"	36			산재사망	
하피잘	"	20			산재사망	
노마	파키스	22		93.4.10	청자녀급살증후군	
무하마드 나흐	"	40		93.4.10	작업장 모터 폭발	3천7백만원
자야세나	스리랑	42			기술사 화재	보상없음
구에남	베트남			93.9.28	독립한국인 살해	보상없음
V. MAN KAI	"				의사	
					의사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최종업(총익대 강사, 법학)

1.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점차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곧 적이었다. 게다가 고대의 국가란 단순한 정치조직을 넘어서 종교적, 부족적 단체였다. 따라서 타국의 출신자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종교적 이단자이기까지 했다. 외국인이 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그것은 법률제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호의를 베푼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 국제 교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보호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각국은 자국민의 해외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를 국제법의 틀 내에서 풀어들인 데에 이론적 기여를 했던 사람은 18세기 스위스의 법학자인 Vattel이었다. 그는 "외국인을 부당하게 처우하는 자는 그를 보호해야 할 국가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각국은 Vattel의 이론에 기초하여 자국민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보호권을 발동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외국인의 본 권리인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법적 형식을 지녔다. 이때에도 개인은 국제법상의 권리 주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정인섭,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2)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발전에 대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인류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전쟁을 전후하여 정치적 난민이 다수 발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국제법상으로도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진 국제연합(UN)도 그 헌장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UN의 기본목적의 하나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UN의 회원국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헌장 55조)

2. 차별 없는 보호의 원칙

UN은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 CHR)가 기초한 포괄적인 국제 권리장전을 천명한다. 그것이 바로 1948년에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이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다른 지위"에 따른 다른 구별 없이 선언상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고 하였다.

국제연합 회장, 세계인권선언의 균등대우의 정신은 다시 국제인권규약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199년에 제정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A 규약)의 전문을 보게 되면, "인류사회에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규약 제2조 제2호는 "이 규약의 당사국들은 이 규약의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함으로써 이 국제규약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약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들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근로권 ; 제6조),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근로조건 ; 제7조), 노동조합결성·가입·활동·파업권(제8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차별 없는 보호의 정신은 지역적 인권조약인 유럽인권조약, 미주인권조약, 아프리카인권헌장 등에도 공통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ILO)의 111호 조약(1958년,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조약)을 보게 되면, 제1조와 제2조는 회원국이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하여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가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제법의 흐름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이상에서는 차별대우 금지 원칙에 대한 국제조약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한걸음 나아가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위를 다루고 있는 조약들도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을 형성한 데에는 ILO의 공이 커다. ILO는 1949년 제97호 '이민노동자에 관한 조약'과 같은 해 나온 제86호 권고, 그리고 1975년 제143호 조약과 같은 해의 151호 권고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제97호 조약 제6조는 적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균등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a. 1) 임금, 가족수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유급휴가, 가내노동의 제한, 최저연령, 훈련, 여자와 연소자의 노동 2) 노동조합원의 자격과 단체교섭의 이익 3) 숙박시설
- b. 사회보장
- c. 고용관련세, 조합비, 각종금
- d. 법적 절차

ILO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를 꾀하였는데, 제143호 조약은 제9조 제1항에서 "이민노동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그 지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수, 사회보장 및 기타의 급부는 과거의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로 근거로 하여 본인 및 그 가족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게 기왕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청구나, 그 동안 입은 산재에 대한 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노동력의 이동이 늘어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협이 높아지면서도 UN도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UN은 특히 불법,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노동자거래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었다. 즉 1972년 7월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불법 및 비밀리의 거래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에 관한 문제의 검토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지시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그리고 유엔총회도 같은 해 11월 15일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유엔의 의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일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12월 UN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약은 총 93개조에 걸쳐서 외국인노동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4.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법적 지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여러 부류가 있다. 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 이외의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정주 외국인(주로 화교)으로 나뉘며, 이러한 자격 자체가 없는 불법체류자가 있다. 이 가운데 외국에 비해 가장 특색있는 제도가 이른바 산업연수생제도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가 많은 제도가 또한 이 제도이다.

내국인은 곧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외국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기본틀을 가진 이 제도는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위에서 살펴본 국제법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특히 1995년 2월에 발표된 노동부의 지침([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와 8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위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퇴직금이나 해고제한에 관련되는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그렇지만 간단한 예로서 1년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연수생이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원이 연수생이라 하여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의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의 경우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의 경우에도 그 근로의 실질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296;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카27730 판결)을 취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이 말 그대로 기술연수 중이라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른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내국인과 균등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용허가제의 내용 및 예상효과

1. 고용허가제 논의의 배경

고용허가제가 논의되는 배경은 한마디로 현행 연수생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연수생제도 하에서는 국가간 공식적 협약이 없이 민간 인력송출기관이 인력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수수료 부담이나 중간착취, 부적격자의 유입 등을 막을 수 없다. 둘째, 연수생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실상의 근로관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법취업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현장이탈의 원인이 되며,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장기적 국익에 손상을 준다. 셋째, 연수생제도가 저임금, 장시간, 무권리 상태에서 계속되는 노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당장은 중소 영세기업에게 이득을 안겨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저체시키는 데 일조한다.

실제로 연수생의 무단이탈과 불법취업, 이로 인한 "인력의 암시장" 형성 및 노동시장의 왜곡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래 표는 1995년 5월과 8월에 입국한 연수생 가운데 이탈자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95년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연수생이 3,429명이 증가하였는데 이탈자는 3,232 명이 증가하였다. 즉 수치만 보면 이 석 달 사이에 새로 들어온 연수생은 거의 다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연수생의 이탈규모 추이

시기	입국 연수생 수	이탈자 수	이탈율
1995년 5월 10일	19,702 명	6,111 명	31 %
1995년 5월 31일	24,552 명	6,139 명	35 %
1995년 8월 31일	27,981 명	9,371 명	33 %

이렇게 이탈하는 연수생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불법체류자의 숫자 변동을 보면 1992년 12월 말에 30,800여 명이던 것이 2년 뒤인 1994년 12월 말에 48,231 명으로 56% 이상 늘어났고, 불과 그 1년 뒤에는 81,000여 명으로 늘어나 증가율은 68%로,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995년 11월 이후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무부의 단속에 강하게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말에서 1996년 1월 말 한 달 사이에 3천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즉

이것은 현 연수생제도를 통한 인력수급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강행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실효를 발휘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규모의 추이

(단위 : 명)

시기	불법체류자 수
1992. 12월 말	30,800
1994. 12월 말	48,231
1995. 4월 말	54,308
1995. 7월 말	61,472
1995. 12월 말	81,866
1996. 1월 말	84,385

이러한 문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면서, 연수생제도가 가진 내적 결함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1월에는 산업체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던 불법취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실련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 뒤에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산재를 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체에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미 귀국한 산재근로자들도 3년을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이른바 합법적인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등 기이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보다 낮은 저임금, 감금노동, 수당없는 강제잔업, 송출업체의 횡포 등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네팔출신 연수생 13명이 1995년 1월에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나아가 국제적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노동부에서는 연수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 연수생에게도 법정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기본적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침을 위반해도 법적 처벌이 어려워 근본적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또한 이것은 현행 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개선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새 지침의 시행 이후에도 이탈자가 4%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김원배 1995).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허가제가 연수생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새로운 제도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중간착취를 배제하며, 불법취업도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이다.

2. 고용허가제의 내용

노동부에서 마련하여 현실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취업의 합법화

- 외국인력의 활용은 국내인력으로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문에 대해 최소한으로 허용하되, 이를 합법으로 취업시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한다.
- 고용허가: 단순직종에 종사할 외국인근로자를 특정 사업장에 특정기간 도입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허가(국적, 직종, 인원, 성별 등을 제한적으로 허가)
- 노동허가: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개개인에게 특정 기간동안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허가(취업사업체, 직종 등을 제한하거나 국법의 준수, 기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고용계약의 중요가 아니라도 허가를 취소하여 출국조치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 설치/운영(노동부)
 - : 단순직종 외국인력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모 추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사후관리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 : 산업인력수급 예측을 토대로 국내 노동시장(실업자, 유휴인력 등), 직업 훈련·고용보험 등에 의한 인력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책정
 - : 연초에 연간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적정외국인력 규모를 공표하고 연중에 국내실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의 공공화

- 고용허가 신청
 -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함
 - : 고용보증금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경비 및 임금체불청산 등의 보증금으로 고용보증금을 고용허가 신청시 예치
 - : 사전 국내근로자 고용노력 의무화 - 자동화·작업개선 사항 심사후 허가여부 결정
- 외국인 근로자 모집
 - :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
 - :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야 함

; 무단이탈 외국인의 모집과 외국인력 스카웃을 통한 모집 금지

- 고용계약 체결

-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 : 고용계약 체결시 그 내용에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금지(장기체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전·후 건강진단 및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

(3)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합리화

- 고용/노동허가를 받고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세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을 적용
- 입국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각종 연금에 관한 사항 미적용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책임자를 지정, 외국인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전담수행케 함

(4) 외국인근로자 고용분담금(Ivy) 부과 및 관리감독의 체계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분담금(Ivy) 부과
-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는 근로감독관이 수행
 - : 노동허가없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현행법으로 단속, 관련기관에 인도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휴·폐업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 휴·폐업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5) 정부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체제의 강화

- 법무부

- : 출입국관리법상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전문기술직종과 해외진출 모기업의 현지고용인원 연수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관장 (현행대로)
- : 출입국관리법상 원칙적으로 국내취업이 불가능한 단순직종 외국인력의 입국비자발급, 입출국 관리 및 불법취업자 조치 등 업무 (현행대로)

- 통상산업부

: 단순직종 외국인력에 대하여 중기협을 활용한 모집과 선발 (현행대로)

- 노동부

: 단순직종 외국인력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운영
: 입국한 단순직종 외국인력의 사업장내 관리 관장

3.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론

통상산업부나 법무부, 중기협 등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반대론의 핵심적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기업부담의 증대

권익보호가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대우를 뜻하며, 이는 퇴직금, 연월차수당, 보너스, 복리후생비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외국인력 활용의 잊점이 사라지게 된다. 더구나 94년 초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수준의 연수수당을 보장받고 있으며 정해진 작업시간만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기대효과는 이미 충족되고 있다.

② 현장이탈 예방불가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연수생의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와 연수생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의 징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에는 이탈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수생이 이탈하기보다는 관광비자나 친지방문으로 오는 사람들이 불법취업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탈자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 도입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이탈을 막기 어렵다.

③ 고용의 유연성 악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구인신청-노동부 허가-법무부 허가 등 절차가 복잡해져 현행보다 노동공급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입국허가(비자) 이외에 또다시 고용허가/노동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인력공급이 3-4개월 늦어지고,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필요인력이 탄력적으로 공급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④ 장기정착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발생

법제화로 도입이 크게 늘면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및 유입증가로 인하여 주택문제, 사회복지문제, 범죄증가, 결혼 및 가족문제, 2세교육 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력의 유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4. 고용허가제에 대한 노사의 인식

(1) 현행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현행 연수생 제도에 대해 사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선 "연수생이 아닌 정식 취업자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 등 약 53% 정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제도로 인해 임금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불법취업자와 불법고용은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70%를 훨씬 넘고 있다.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취업한 연수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90%가 넘고, 이탈하는 연수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연수생을 보낸 송출업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80%를 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 현재의 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의 형태로 도입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과반수의 사용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수생의 현장이탈이 사용자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사용자들은 연수생의 불법취업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임금상승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논의 중인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가 사용자의 눈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침을 뜻하고 있다.

외국인 연수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업체,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취업자로 도입해야	135(13.3)	399(39.4)	195(19.3)	229(22.6)	54(5.3)
임금이 높아지더라도 불법취업자를 막아야	261(25.6)	491(48.1)	126(12.3)	120(11.8)	23(2.3)
연수기간을 늘여야	261(25.6)	520(51.0)	174(17.1)	60(5.9)	5(0.5)
이탈 연수생의 처벌을 강화해야	593(57.4)	363(35.1)	58(5.6)	13(1.3)	7(0.7)
이탈연수생 발생 송출업체를 제재해야	450(44.1)	379(37.1)	113(11.1)	68(6.7)	11(1.1)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앞서 살펴대로 동일한 외국인이라도 연수생의 신분으로서 보다는 불법취업자로서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연수생이 주어진 현장을 이탈할 동기는 이미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장 이탈의 이면에는 불법 브로커들이 이들을 유인하여 불법고용주에게 알선해 주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용자들

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연수생 제도는 불법취업자를 근절함과 동시에 중간브로커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쳐야 한다면 우선 개선 사항(상배수 응답)

(단위 : 업체, %)

	번호수	비중
불법취업자 근절대책	802	29.5
능력있는 인력수입을 위한 대책	330	12.2
신체적 조건(건강진단 의무화)	203	7.5
언어소통을 위한 어학연수	487	17.9
중간브로커 방지	587	21.6
연수생이 아닌 취업자로 수입	307	11.3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사용자들은 불법취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을 들고 있는가? 사용자들은 50% 정도가 불법고용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연수생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23%에 이른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으로 합법화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20%에 이른다. 바로 여기서도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예방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고용허가제'가 논의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취업 방지방안

(단위 : 업체, %)

	번호수	비중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관리강화	246	23.4
연수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50	4.7
불법취업 사용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	526	50.0
외국인근로자 합법화하는 법 마련	212	20.1
기타	19	1.8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그렇다면 외국인력을 정식으로 합법적인 근로자로 도입하는 경우 노동비용이 증가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럴 경우에도 외국인력을 사용자들이 계속 채용할 것인가? 우리의 상식적인 예측과는 달리 사용자들은 2/3가 그래도 외국인력을 쓸 것이라 대답했다.

합법화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비용이 증가할 경우 계속 채용 여부

(단위 : 업체, %)

	번호수	비중
채용한다	703	66.9
채용하지 않는다	348	33.1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 이른바 인력난이란 것이 돈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을 많이 준다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른바 "3D"노동이라 불리는 노동의 질적 측면, 즉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로, 합법화하는 경우, 그만큼 노동력의 질도 좋아져 노동생상성의 상승이 노동비용의 증가를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를 사용자들은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합법화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질적 수준 변화 여부

(단위 : 업체, %)

	번호수	비중
노동력의 질이 좋아진다	489	47.4
변화없다	321	31.1
노동력의 질이 나빠진다	221	21.4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2)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예상효과)

<표 4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용자들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69%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들이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잇점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다 훨씬 클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 여부

(단위 : 업체, %)

	번호수	비중
전적으로 찬성	94	9.0
대체적으로 찬성	625	59.9
대체적으로 반대	246	23.6
전적으로 반대	79	7.6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그렇다면 사용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이른바 "3D직종"에서의 "인력난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것(69.6%)이고, 그 다음으로 연수생의 현장이탈 및 불법취업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인력의 질을 개선시킬 것, 인력의 계획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노무관리가 용이해 질 것이라는 기대도 4.6%의 응답자가 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인력난 해소 효과
- ②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예방 및 정착효과
- ③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예방효과
- ④ 인력의 질 개선효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성 이유

(단위 : 업체, %)

	반도수	비중
국내 인력난 해소	513	69.6
외국인력의 질 개선	48	6.5
노무관리가 용이	34	4.6
불법취업 방지	95	12.9
외국인력의 계획적 공급 가능	47	6.4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용자들은 그 이유로 "추가적 비용 부담"(31.6%)을 들거나, "고용허가제로도 불법취업 막을 수 없기 때문"(18.0%)에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행 산업연수제도의 개선으로 충분"(16.8%)한데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연수생 활용의 이점이 소멸"(15.2%)하거나 "필요인력 적기 공급의 어려움"(10.0%)이 생길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아무런 제도변경도 없이 "현행 연수제도로 충분"(8.4%)하다는 견해도 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 이유

(단위 : 업체, %)

	반도수	비중
노동비용 증대	200	31.6
연수생 이용의 이점 소멸	96	15.2
인력의 적기공급 어려움	63	10.0
현행 연수제도로 충분	53	8.4
고용허가제에서도 불법취업 막을 수 없다	114	18.0
현행 연수제도의 개선으로 충분	106	16.8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또 고용허가제 도입시 예상되는 국민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사용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축소될 것이다"라는 응답에 대해 '그렇다'가 30.6%, '그렇지 않다'가 19.7%로 나타났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대답이다. 즉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부분은 국내 근로자들이 가지 않는 부분, 즉 "인력난"에 허덕이는 업종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일자리의 공백이 생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는 적으리라고 예상된다. 이것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도 모든 업종과 모든 산업분야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취업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조정의 지체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가 25.5%, '그렇지 않다'가 12.1%로 나타났다. 이 산업구조 조정의 지체 가능성은 사실상 현재의 연수생제도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3D업종"에서 제반 근로조건이 상향조정된다면 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와는 무관하게 그만큼 산업구조 조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무분별한 유입을 규제하여 사회문제화를 억제할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 57.3%, '그렇지 않다' 9.1%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숫자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또는 의도하지 않은 외국인력 유입,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문제있는 외국인(예컨대 마약사범, 전염병 환자 등)의 유입의 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도 관련된다. 특히 현 연수생제도는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응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응답이라 볼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예상 파급효과

(단위 : 업체, %)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회 감소	55(5.9)	231(24.7)	465(49.7)	152(16.2)	33(3.5)
외국인 근로자 사용 직종/산업의 구조조정 지체	33(3.7)	194(21.8)	555(62.4)	99(11.1)	9(1.0)
외국인력 유입을 규제하여 사회문제화 억제	111(12.1)	416(45.2)	309(33.6)	68(7.4)	16(1.7)

자료 :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 1995.

(3) 고용허가제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기대(예상효과)

면접한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형편이나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나 정부의 불법취업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비록 고용허가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기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합법적 지위의 획득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는 합법적인 체류와 노동의 자격이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었다. 한 네팔인은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정책을 만들지 않는 것 같다.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 방글라데시인은 연수제도에 대해 "불법취업자와 연수생과의 임금차이가 커서 연수생들이 이탈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을 불법이라하여 또다시 내쫓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네팔인은 "취업자에게 근로비자(Green Card)를 주어야 한다. 불법취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2년이상 일하면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그린카드를 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나처럼 4년을 일하여도 여전히 불법취업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② 근로조건의 개선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임금체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비인격적인 노무관리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한 중국교포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서 근로환경 개선, 임금인상, 산재 보상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방글라데시인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자유롭게 왕래하여 자국에서와 같은 사회생활(공동체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③ 차별대우의 감소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의문시하고 있었다. 한 네팔인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한 방글라데시인 역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실시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제도화된 차별 이외에도 가슴깊이 내재된 사회심리적 차별의식의 불식이 또 다른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국교포는 나아가 "만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하였다.

④ 노동인권의 보호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노동인권의 개선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는 비교적 커다. 한 네팔인은 "한국정부는 외국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합법적 지위를 원한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합법적 근로권과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권리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만일 제대로 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우리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훈련을 받게 되며,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네팔인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여행 등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주체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은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⑤ 기술 습득과 능력개발

안정된 직장의 확보는 외국인근로자도 일정한 기능과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본인이 본국에 돌아 가서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일하는 기업에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작업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나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고용허가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으면, 성급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 조차도 불법취업자의 상대적 비중을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나아가 노동력의 탄력적 공급이라는 기업의 요구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제한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잘 보여 준다.

그는 네팔에서는 대학 2학년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92년 2월 소개비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친구소개로 취업하게 되었다. 한국을 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고 입국하기가 쉽기 때문이라 했다. 그가 받은 한 달 임금은 70만원 정도였다. 그는 플라스틱 사출 작업 중 손가락이 1마디씩 세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가 겪는 고충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통해 상담하여 해결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법취업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별대우는 약간 개선되겠지만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휴가기간 동안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한 네팔출신 불법취업자와의 면담, 1995. 12)

여기서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불법취업은 줄어들망정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여전히 임금수준의 국제적 격차가 존재하는 한 불법적인 노동력 유입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임금의 시장원리가 작용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도적인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합법적인 취업자와 불법취업자의 임금격차는 다소 축소되는 수준에서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간접 자료 목록

<단행본>

1. E. Geugler/ 이현수 역, 1994 [외국인근로자의 기업적응: 독일사업체 실태] 서울: 유진
2. 어수봉, 1992 [한국의 노동이동] 한국노동연구원.
1990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3. 김시평, 1990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대책소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논문
4. 김준(속), 1990.6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서울: 국회도서관 입법분석자료실
5. 노동부, 1992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면 등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
과천: 노동부
6. 노동부, 1993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정책적 과제 : 주요 수입국의 정책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천: 노동부
7. 노동부, 1994 [단순기능 외국노동력의 국내취업에 관한 정책대안] 과천: 노동부
8. 노동정책연구소, 1995 ["외국인력 정책과 인권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 노동정책연구소
9. 대한상공회의소, 199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0. 대한상공회의소, 1993 [해외 노동력 유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상공회의소
11. 법무부, 1995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994] 과천: 법무부
12. 설동훈, 1992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노동자] 서울: 경제와 사회
설동훈, 1993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일·연대회의 발표논문
13. 신계륜, 1994 [외국인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실태조사]
중국 연변자치주 실태조사보고서
14. 정무장관 제1실, 1994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서울: 정무장관 제1실
15.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1993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2차 실태조사]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16. 최익화, 1993 [외국인노동자의 법적보호] 노동법연구회
1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3 [외국인 노동자와 인간의 기본권]
서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8. 한국노동연구원, 1993 [외국인력 수입과 정책과제] KII 노동정책포럼 93-2

외국인 노동자 간접 자료 목록

<간행물>

1. ?, 1992.74호 [인권의 사각지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월간 말]
2. 경제단체협의회 편, 1992.12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국제노동동향
3. 고윤희, 1995. 4.19. [한국 속의 외국상품: 외국인 인력수입 실태] [뉴스워크]
p. 86-86
4. 고현주, 1992.12 [중국동포의 국내취업 더 개방될 수 없나?: 일본의 "외국인기능
실습제도안"과의 비교] [교포정책자료 p.38-41] [해외동포] 1992년 8월호 p 14-17
5. 고준기, 1994.1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법적보호: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군산대지역개발연구> p.113-129
고준기, 1995.1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대책과 법적 보호]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6. 구본희 외, 1995.7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활용][인사관리] p13-31
7. 김 당, 1995.2.2. [이럴줄 알았으면 한국에 안왔다.] [시사저널] P.32-34
1995.2.23. [외국인 노동자 정책, 핵심은 쇄국화?] [시사저널] P.30-31
1995.9.28. [필리핀 노동자에 반한감정 확산] [시사저널] P.54-63
8. 김병기, 1994.12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실태와 노동문제] [경북대 경상
논문] P.33-46
9. 김선수, 1995.1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법조춘추] P.72-96
10. 김옥암, 1992.12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영남경상논총]
11. 김유성 외, 1994.12 [고용환경의 변화와 법적대응] [서울대노동법연구] P.3-75
12. 김진수, 1994.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대응방안] [보건사회논총]
P.126- 152.
13. 김재금, 1995.7.27. [방글라데시 강변마을의 비극] [한겨례21] P.82-83
14. 김종일 외, 1995.7.27.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국내 외국인 노
동자의 실태] [경제와 사회] P172-207
15. 김태경, 1995.10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 (한일연구)
P.425-457
16. 김현모, 1995.6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내원천징수] (조세) p.144-153
17. 김홍락, 1994. <일본의 입관법 개정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 (서울대학교 지역연
구) p.215-237
김홍락, 1995.3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정책과 실상> (한국노동문제연구원)
-현대노사-

외국인 노동자 관리 차별 목록

18. 노동부, 1995.4 <외국인력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마련> (도금) p. 30-32
19. 노사신문사 편, 1994.3 <외국인 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에 관한 국제조약> (노무관리) p.36-40
20. 노순규, 1995.11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고용허가제> (재정) p.68-73
21. 박구재, 1995.1.26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네팔노동자들의 절규 : 기술이 아닌 증오만을 배웠다.> (뉴스메이커) p.42-43
22. 박래영, 1993. 제16권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경제논집)
23. 박석운, 1994.9. <외국인노동자대책에 관한소고>
1994.1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어쩔 할 것인가? 그들 인권 무시하면 국제화시대에 낙오한다.> (월간중앙) p.298-305
- 1995.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법과 사회) p.273-305
- 1995.5 <외국인노동자 정책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환경과 사회) p.87-98
- 1995.4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산업사회 연구회, 1995.4
- 1995.1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자료집, 1995.1
24. 박영은, 1995.10 <세계화의 지형변화와 문화적 갈등> (정신문화연구) p.97-118
25. 박호환, 1992.3권 <외국노동자 공용의 경제적 효과> (노동관계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26. 서승원, 1995.5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과연 우리 현실에서 바람직한 제도인가? 고용허가제의 도입전망을 중심으로> (의류산업) p.31-40
27. 서명수 외, 1995.2.15 <열악한 근로환경 대책은: 막막한 한국의 외국인근로자들> (이코노미스트) p.26-32
28. 설동훈, 1992.9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p.113-144
1993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현황>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일연대회의 발표 논문-
29. 송병준, 1993.5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방향> (산업동향) 산업연구원
1994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원활화 방안: 외국인력을 중심으로>-산업연구원-
1994.7, <외국인력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12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 산업연구원
30. 송문홍, 1992.2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신동아) p.450-461
31. 송용희, 1995.2.2 <네팔인 농성의 계기로 본 외국인 근로자> (주간한국) p.52-53
32. 심혜숙, 1992.12 <중국 조선족 유입과 분포> (북한학보)
33. 野村務, 1995.1 <일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法曹春秋) p.172-175
34. 이성원, 1995.4 <재한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실태> (신앙세계) p.134-141

외국인 노동자 관리 차별 목록

35. 이영준, 1995.7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국가책임> (인도법논총) p.65-84
36. 우종창, 1995.1.26 <외국인기술연수생 「인권명세서」> (주간조선) p.86-87
37. 유도진, 1993.12 <독일 외국인 고용정책과 사회문화적 갈등> (경희대 사회과학논총) p.11-35
38. 이우현, 1994.11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의선택기준: 선진국 경험에 주는 교훈> (명지대경제논총) p.293-313
- 1991.2 <외국인 노동자 수입문제의 경제적 분석> (무역학회지) p. 209-226
1995. <아시아지역의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 1995년 제4회 지역 연구 학술발표대회 보고서, 명지대
39. 이만희, 1991.12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 증가에 대한 단속 대책> (저스티스) p.132-146
40. 이지영, 1995.5.18 <한국은 노예 수입국인가> (시사저널) p. 48-55
41. 이해경, 1992. 제28집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학) p.89-113
42. 유명기, 1995.4 <외국인 노동자 차별의 구조> (녹색평론) p.69-82
43. 장택준, 1994.12 <외국인노동자 수입에 대하여: 9.17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한세정책) p.20-27
44. 조승혁, 1995.4 <해외 노동자의 실태와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사상) p. 147-161
45. 조주현, 1995.3 <외국인력관리 개선방안> (나라경제) p.81-84
46. 조주현, 박주태, 1995.5 <외국인근로자 공용허가제 도입> (나라경제) p.45-53
47. 최돈길, 1994.11 <노동시장 현황과 외국인근로자 유입 실태> (경영계) p.18-21
48. 해외건설협회 편, 1989.2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관한 조사. 검토 보고서> (해외건설)
49. 해외건설협회 편, 1989.3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체계 협조방향> (해외건설)
50. 홍성진, 1994. 창간호 <외국인노동자 대책에 문제있다.> (시민과 변호사)-학위논문-
51. 김재오,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안"), <산돌논단> 1995.
52. 김진수,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질서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199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건사회 논집> 14(1) 1994
53. 김소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 연구원, 1995.
- 김소영, <외국인력 관계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5.8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자료 목록

54. 박영범 외, <외국인력의 활용과 정책과제>, 서울:중소기업연구원, 1994.8.
55. 박영범, <비숙련 외국인력의 활용과 산업기술 연수제도>, 중소기업 연구원, 1995.
- <외국인력수입과 정책방향, ILO협약과 국내 노동시장문제> -노사관계-제2권
2 호, 1992.6
56. 박진희, <독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현황>, KLI노동연구 속보41호, 1995.8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현황>, KLI노동연구속보 39호, 1995.7.
57. 오천근,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서울지방변호사회-시민과 병호사- 1995.12
58. 이종구외 3인, <국제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한국내 취업> -사회문화 연구- 1994
59. 이종구,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운동> -한국산업 사
회연구회, 1995.4
60. 이광택,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
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월간노동법률- 41, 중앙경제사, 1994.10.
<한국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 한국노사관계학회 발표논문, 1994.11(외국인노동에
대해서는 PP.56~57)
61. 정인수, <중소제조업 인력현황과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1995.3
62.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
구회편, 제4호, 서울전원, 1994
63. 최의정, <외국인 불법체류실태와 관리방안>법조협회, 법조, 453:216-226, 251, 1994
64. 하종춘, <법조> 463, 1995.4.
65. 허명구, <외국인노동자는 불청객인가> (주)우리일터기획, 1995.3.
66. 김일중, <불법경제행위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규제완화-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4 봄, PP.33~60
67. 로저 브닝,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외국인력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절차적 제문제>
68. 박진, <남북경제교류협력과 통일을 대비한 해외인력수입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1994.8
69. 박호환, <외국인노동자고용의 경제적 효과>-인사조직관리학회 발표문, 1993
70. 백석현 <해외 노동력 유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
제연구센 터, 1993.5
71. 백석현 <해외노동력 유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
제연구센 터, 1993
72. 산업연구원,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 1993.12
73.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1995.11
74.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소
개소기념 심포지움, 1994.12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자료 목록

75. 최돈길,<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연구-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1994.12

76. 홍성진, <외국인 노동자 정책방향 모색> 한국노총, 1994.8

< 국내세미나 자료집 >

1. <외국인 불법고용 어떻게 볼것인가?> 서울노동운동연구소의 3개 단체 주관, 1992.
2. <외국인력 정책과 인권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동정책연구소, 프레스
센터, 1995.4.4.
3. <아시아-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노동정책
연구소 주최, 타워호텔 몽마르트실, 1995.5.30-31
4.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일연대회의> 서강대산업연구 연구소, 1993.9.21-23
5. <외국인 노동자 건강문제를 위한 세미나> 기독청년의료인회 외, 1994.2.26
6.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 실태 및 대책> -종로성당-
1994.10.27

< 기타 자료 >

1. 코리아 리씨치센타, <외국인 산업 연수생제도 개선에 대한전문가 의견조사> -국정
여론-78, 1995.2.
2.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외국인력정책과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5.4.4.
3. 노동부/제117호 -노동뉴스-제5권2호, 1995.2.15
<외국인력 획기적 종합대책마련> -노사정책실 노정과 1995.3
<단순기능 외국노동력의 국내 취업에 관한 정책대안>, 외국인력 정책연구반, 1994.
<외국인력 획기적 종합대책 마련> -한국산업 훈련협회- "노동"29(3) 1995.2
<산업재해분석> 1994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종합대책>1994.
<싱가폴의 외국인 고용제도 및 취업열선 실태> 고용정책자료 93-1 1993.3
<영세규모사업장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994.
<외국인노동자문제의 정책적 과제> 1993.12
4. 근로자복지공사, <외국인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전 지원방안> 1994.8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자료 목록

5. 법무부 훈령,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각호
6. 이건, <명동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외국인노동자 상담사례 분석>
7. 인명진 외,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정책자료 94-8
8.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한국사회 보험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1994
9.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섬유신발업종 외국인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1994
10.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업기술협력단,<연수생관리자 숙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4.8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계약서>, 산업기술 연수협력단, 1994
<네팔 연수생 명동성당농성관련 자료> 1995.
11. 한국노동연구원, <인도양 5개주의 노동시장 전망,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শ, 스리랑카, 네팔의 노동동향>-동향분석실험편, 한국노동연구원, 1994-
12. 경총,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개선방안> 1995.

< 학위 논문 >

1. Baldonado, Jose'Chito' G. 1995 «A Study of Foreign Minority Group Assimilation in the Korean workplace: Impacts and Implications»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고희준, 199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미정, 1995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성진, 199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수복, 1990 <1980년대 한국의 노동정책>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영석, 1995 <국내 외국인 산업 근로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 산업 연수생과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용희, 1991 <노동 기본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박충환, 1995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문화접촉에 관한 연구: 작업장내 비형식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9. 신선경, 1995 <주한 외국인노동자의 사전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자료 목록

- 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유승무, 1994. <반월공업공단 노동자 계급>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이민원, 1993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연구: 필리핀 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2. 이육정, 1994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3. 조정현, 1995 <외국인노동자 선교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최영수, 1995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수도권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흥주일, 1995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에서 본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방향>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조동호, <북한의 노동력 현황> <전환기의 북한경제> 제4회 북한경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10

<영상자료>

1. MBC 교양제작국 제작 1990 <막차로 온 조선족> (PD수첩) 서울 : 프로덕션 제작 1992 <인권에도 국적이 있습니까?> () 서울
3. " 프로덕션 제작 1993 <중국교포 사기결혼에 두 번 우는 농촌총각> () 서울
4. " 프로덕션 제작 1993 <죽어서도 대접 못 받는 외국인노동자> () 서울
5. " 프로덕션 제작 1993 <이중국적자 야누스의 얼굴> (집중조명 오늘) 서울 : MBC프로덕션
6. KBS 영상사업단 제작 1994 <개방시대, 달라지는 풍속도:외국인이 몰려온다.> 서울 : KBS영상사업단
7. MBC 프로덕션 제작, 1992 <중국교포 서울을 말한다.><6.25특별기획> 서울 : MBC 프로덕션
8. " 교양제작국 제작, 1989 <상하이에서 온 김씨네><인간시대> 서울:문화방송사업단.
9. " 프로덕션 제작, 1992 <연변색시> <인간시대> 서울: MBC 프로덕션
10. KBS 영상사업단 제작, 1992 <연변처녀 과수원 세대 1년> <현장기록 요즘사람들> 서울:KBS영상사업단
11. MBC 프로덕션 제작, 1993 <불법체류자 - 제 1부 후세인과 아키노, 제2부 연변 아줌마의 우리 한국, 우리중국, 제3부 코리아 드림> 서울: MBC 프로덕션
12. MBC 프로덕션 제작, 1996 <중국교포의 생활> 서울: MBC 프로덕션

인터넷 상의 이주노동자 관련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여러분이 인터넷 상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사이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선 적당한 Search Engine을 골라야 합니다(네스케일 상에서 Net Search를 클릭해주면 다양한 Search Engine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Altvista와 같은 Search Engine을 선택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는 anti-racism 를 쳐서, 이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갑니다. 물론, migrant workers 역시 쳐보시길.. 이렇게 찾아들어간 단체들이 소개하는 단체들을(link해주는) 찾아 들어가 보시길... 그러면 여기서 간략히 소개하는 단체들을 모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메일을 보내십시오(긴급하다는 메시지는 잊지말고. 메일 보낼 주소는 홈페이지의 맨 밑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 따라서는 메일링리스트를 소개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말고 가입하십시오(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6하원칙에 입각해 모두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의지에 따라, 각단체들은 여러분의 구경거리 일 수도, 해외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창일 수도, 또 동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CCRI - California Civil Rights Initiative

(웹주소-<http://www.publicaffairsweb.com/ccri>)

: 인종, 성, 민족적 기원에 무관한 완전한 참여에의 보장과 촉구하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서 인종, 성, 피부색, 민족성이나 국가적 기원이 공공 고용, 공공 교육 또는 공공 계약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종적, 성적 선호를 끌어내고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없는(color-blind) 사회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CLU - American Civel Liberties Union

(웹주소-<http://www.aclu.org>)

: 범죄, 사이버공간 내의 자유, 사형제도, 언론의 자유, 에이즈, 이민자의 권리, 성적, 인종적 평등, 재생산의 권리, 투표, 작업장 내의 권리 등에 대한 자유의 적극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곳이다.

Crosspoint Anti-Racism

(웹주소-<http://www.magenta.nl/crosspoint/>)

: 이곳을 가면, 인권, 반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여성의 권리, 반파시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계에 걸쳐 있는 수많은 조직들과 link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으나, 여기를 들려서 Search를 하면 웬만한 단체들은 모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magenta.ml/magenta/>

: 전세계적인 반인종주의의 집단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이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각각의 관련 단체들이 결합되어서 다양한 형식의 그림이나,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영어권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AEGEE - Initiative Human Rights Working Group

(웹주소-<http://www.tue.nl/aegee/hrwg/lasplamas.html>)

: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민에 관한 행사가 벌어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이민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안제시까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이다. "all - different, all - equal"이 모토이다.

Refugee

(웹주소-<http://www.igc.org/amnesty/refugee.html>)

: 망명객들 인권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국제사면위원회로 알려져 있는 엠네스티에 만든 사이트로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민 정책에 대한 이민자의 점증하는 분노에 즈음해서 피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한 축으로 펼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의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외 가볼 만한 사이트들

Affirmative Action for Migrants (미국)

(웹주소 - <http://pw2.netcom.com/~jimrobb/affirmative.html>

[http://www.apc.org\(APC\),](http://www.apc.org(APC),)

[http://ns1.fga.com/aaaa\(AAAA-American association for affirmative action\),](http://ns1.fga.com/aaaa(AAAA-American association for affirmative action),)

한국의 외국인노동자협의회(JCMK)

웹주소 : <http://kpd.cybercom.co.kr/~jcmk>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간담회 주소록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간담회 주소록

프란츠스크 교회 이정호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녹천리 산33-9(478-840) 대한성공회 성생원
Tel: 0346-594-5825

희년 선교회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정환빌딩 4층)
TEL: 02) 861-4394 FAX: 858-7829

대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306-0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1-43
Tel: 042) 623-2387

마산노동문제상담소

(630-010) 경남 마산시 석천동 224-7 여성회관(내)
TEL: 0551) 93-8050 FAX: 8587829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Songnam Migrant Workers' House)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87
Tel: 0342)756-2143-4, 757-8093(겸) Fax: 758-4628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52-059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96-43. 101호
Tel: 02) 869-1347 Fax: 837-1407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Bucheon Foreign Workers' Hous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Tel: 032)651-8351, 668-0077 (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12-1 삼선빌딩 4층
Tel: 02) 765-2010 Fax: 765-2011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간담회 주소록

중국노동자센타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8-1
Tel: 02) 798-6355, 798-6356(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era)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12-1 삼선빌딩 4층
Tel: 02)744-9063 Fax: 745-9804

외국인노동자 마을 (Foreign Workers' Community Center)

서울시 강북구 미아6동 645-112
Tel: 02)983-3783 Fax: 982-9489

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서울 중구 저동 1가 27-2
Tel: 02) 779-2049 Fax: 773-2627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The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Rights)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27-1 우신빌딩
Tel: 02)795-5504 Fax: 6055

인천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가톨릭센타
Tel: 032) 765-1094 Fax: 761-9546

엠마우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 (천주교 수원교구청)
Tel: 033)257-8501 Fax: 44-3991

대구 근로자회관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35
Tel: 053-253-1313 Fax: 255-4861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강력 단체 주소록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49-2 번지

Tel: 0345) 492-8785, 492-8756(겸)

구미 가톨릭근로자센타

경북 구미시 원평1동 분도신협 3층 374-2

Tel: 0546-52-2314 Fax: 52-6929

시화일꾼의 집(Shiwa Ilkun's House)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87번지 정왕천주교(내)

Tel: 0345)497-7151(겸)

이리 노동자의 집

전북 이리시 창인동 1가 235 창인동 성당(내)

Tel: 0653-52-6949, 855-2325(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orea Church Women United)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Tel: 02) 708-4181-3 Fax: 708-4186

대구 나눔의 집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562-6 2층

Tel: 053) 556-633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Tel: 02) 522-7284 Fax: 522-7285

부산 가톨릭노동상담소

부산광역시 북구 채법동 562-43 2층

Tel: 051) 328-9513 모뎀:(천리안) KATOL